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K C R 추 계 학 술 대 회
2015년 한국아동권리학회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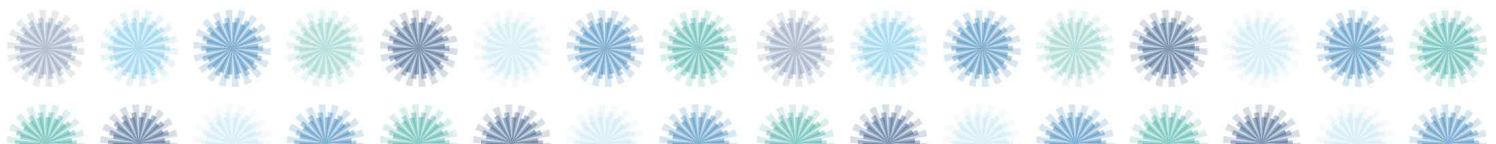
일시 2015년 **12월 4일** (금) 13:30~18:0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701호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한국아동권리학회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환영사

안녕하세요.

2015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년을 맞는 등 아동의 삶의 조건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4일, 한국아동권리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라는 주제로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계학술대회는 2011년 3·4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확인·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2017년 5·6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2016년 국가보고서 집필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5년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세 기관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보다 질적인 아동기 삶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사회가 어떠한 변화의 요구에 처해 있는 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현재의 삶의 진전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이번 논의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황옥경

인사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조강연을 하시는 이재연 교수님, 주제발표를 하시는 황옥경 교수님과 김영지 연구위원을 비롯해 정부 및 학계 토론자분, 모든 준비에 헌신하신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분,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권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도 어느덧 25년에 이른 지금,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아동견해 존중, 체벌금지, 입양 및 교육제도 개선, 성적착취 개선 등은 지난 제1차 심의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2011년 제3·4차 심의에서는 기업활동에서 아동인권 고려나 출생등록제 도입 등 새로운 아젠다도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아동자살 및 괴롭힘 방지도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단순히 내국민을 넘어 망명, 난민, 외국인 아동인권도 이제는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는 경고등을 켜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국가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에서도 짐작하시듯이, 이러한 원칙은 결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

아 숨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국가, 사회의 각종 정책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어 깊이 고민하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이 2017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은 뜻 깊은 성과물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권 과제들도 상당히 많습시다만, 특히 국가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국제인권기준을 포섭한 더욱 커다란 노력과 큰 걸음으로 내딛는 끊임없는 진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우리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시다만, 앞으로는 소위 ‘왕따 없는 나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까지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심도 깊게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 은 경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에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정부는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았으며, 이제 2017년까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인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도 치열한 입시경쟁체제, 소득의 양극화, 불안한 사회안전망, 아동폭력과 학대, 방임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병폐의 희생양이 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지역사회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진로를 찾아 도전하고 성장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방법을 체험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른과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일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행복의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과정에서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가 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의미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권리협약 채택과 같은 해인 1989년에 출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함께 준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프로그램

- ▣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3:30~18:00
-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701호
-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0~14:00 (30분)	등 록	
14:00~14:05	개 회	박성남 아동청소년인권팀장(국가인권위원회)
14:05~14:20 (15분)	인사말	이은경 인권위원(국가인권위원회) 노 혁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20~14:40 (20분)	기조강연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 이재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사회 : 김성준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		
14:40~15:40 (60분)	주제발표1	대한민국 아동, 국민인가? -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아동권리 수준 평가 황옥경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안동현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균 고문(아동행복포럼) 강현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선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정책과제 모색 김영지, 김희진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40~15:50 (10분)	휴 식	
15:50~16:50 (60분 각15분)	지정토론	권재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안재진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정화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6:50~17:30 (40분 각10분)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정심 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차유진 사무관(법무부 인권정책과)
17:30~17:50 (20분)	종합토론	
17:50~18:00	정리 및 폐회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차 례

기조강연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3

주제발표1 대한민국 아동, 국민인가? –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아동권리 수준 평가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교수) 7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정책과제 모색

김영지,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7

지정토론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89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191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5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99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과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차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포스터 발표

고은미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박순호**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13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15

김성인 (인화어린이집 원장) · **이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17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19

신수희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21

양경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23

이형민 (우송대학교 아동복지전공 초빙교수) ·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25

이경미 (꿈나라유치원 교사) · **이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27

박지민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조교수) · **이종원**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창업학부 부교수) 229

이지민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노은혜**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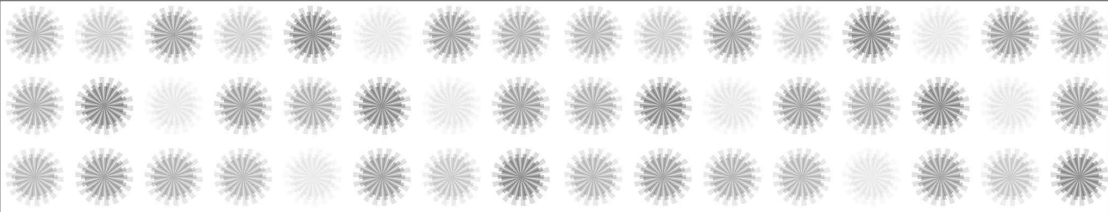
김연하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31

진호려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과정) · **김상림**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233

하병녕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과정) · **김상림**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235

조명자 (호서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전공 박사과정) · **이서영**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 237

부 록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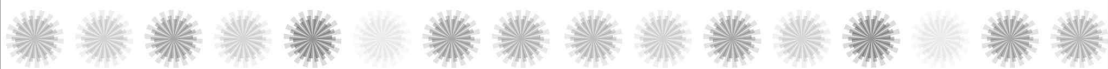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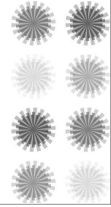
기조강연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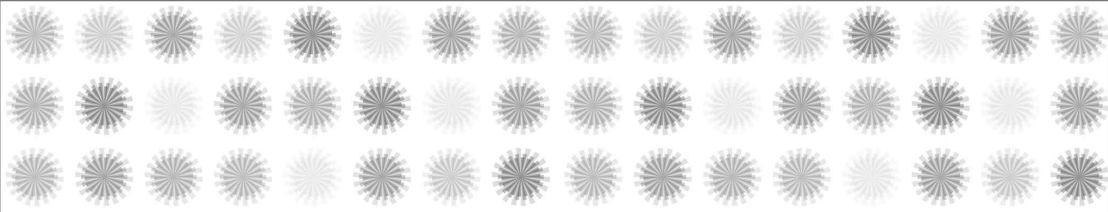
▣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



▮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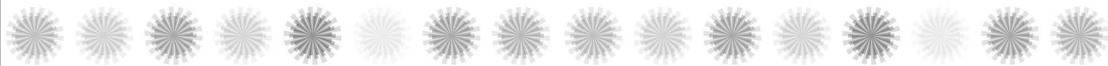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주제발표1

대한민국 아동, 국민인가? -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아동권리 수준 평가

- ▼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교수)
- ▼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 아동, 국민인가?

-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아동권리 수준 평가¹⁾



- |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교수)
- |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흥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의 의미를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비추어 재조명·확인하고 협약 조항이 우리나라 국내법과 정책 그리고 아동 삶에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도되었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된지 25년이 되고 특히 2017년 협약이행에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해로써 그 이전 협약의 조항별 이행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하고도 반복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아동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1) 본 원고는 황옥경외(2015)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경험도 축적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약의 역할은 ‘변화 기제(an agent of change)’가 되는 것이다(Johns & Welch, 2011). 아동권리 개념은 긴급하게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넘어서야 할 하나의 중대한 도전 혹은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주로 모니터링이라는 명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정책, 그리고 아동 삶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3·4차 통합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몇몇 연구(황옥경, 2012,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 의하면 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권고를 중심으로 한 법과 정책에 대한 이행평가는 협약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경우 국가 보고서 제출과 권고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 우리나라 아동의 변화한 현재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여부만을 준거로 권고 이행을 평가하는 것은 정책실효성 평가를 도외시 할 수 있다(황옥경, 2014) 있다. 권고를 중심으로 한 이행평가는 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의미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권고 내용을 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각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법과 정책현황, 이행실태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각 조항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국내법과 정책에 보완되어야 할 지를 제안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 수준의 개선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반이행조치에 해당하는 재원할당과 예산의 공개수립 및 효과 평가, 통계수집 체계가 확고하지 못하고,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물적 자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체벌과 출생등록 등은 1차부터 3·4차 최종전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점도(황옥경, 2014)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아동의 삶과 권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관계는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교실까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소년사법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자기 가족과 갖는 관계는 권리와 아동, 가족,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의 이와 같은 포괄성을 염두에 두고 각 조항별 의미와 국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아동권리협약 규정의 의미를 조항별로 분석 정리하고 아동권리 협약의 각 조항별 의미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의 조항별 의미들에 국내 법령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규정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원인 분석 등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조문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히 의미 있는 협약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있는 분야와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아동청소년 삶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보고와 자료를 토대로, 최종견해 등을 살펴되, 권고의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 권리 담론의 지형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해 내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이의 개선안을 더불어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틀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의 의미에 따른 국내법과 정책의 실효성 및 문제점 등 분석
- 국내 아동·청소년인권 상황을 통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 평가

-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정부 및 일반사회의 이행 수준 점검 및 이행 방해요인 제시
- 미래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향 제시 및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정부보고서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법령, 정책자료를 수집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아동의 권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나 관행적으로 불이행이 방치되고 있는 조문 등을 발견해 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논의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를 해당 조항의 경우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조항(제 1조~제 41조) 중 협약과 비준당사국의 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4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과 국가보고서를 널리 알릴 의무를 규정한 44조의 총 40개 조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협약 중 제 2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 규정, 그리고 제 3부 협약 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조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 아동·청소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조문별 이행수준과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 및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동·청소년 전문가 55인을 설문대상자로 확정하였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아동권리, 아동복지 등 정책 담당자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공부문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확정된 개별 조사 대상자는 전화와 E-mail을 통해 접촉하였으며, 인터넷 서베이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0부의 설문이 완료되었으며, 응답률은 약 67%이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CRIN의 아동권리협약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구분을 12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협약 이행의 방해요인은 초기에는 개별 문항마다 각기 다른 방해요인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연구진의 개별 방해요인이 설정되고, 설문 결과의 활용에 있어 통일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일반 인권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9가지 방해요인을 인권방해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I. 협약 각 조항별 의미와 이행 현황2)

1. 제 1조 아동의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 조문의 의미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의 제1조는 아동(child)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의 시작이 언제인가?’, 그리고 ‘아동의 끝은 어디인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동의 정의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권리의 획득(예를 들면 선거권 등), 혹은 특별한 보호의 상실과 같은 문제로 인해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사형 금지(no capital punishment) 혹은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 혹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 금지(협약 제38조), 고용금지 연령 제한(협약 제32조) 등이다.

협약에서는 각 국가들이 법률에서 최소 연령(minimum ages)을 규정할 때, 협약의 기본 원칙의 맥락에서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비차별의 원칙(협약 제2조)에서 남녀에 대해 다른 결혼 연령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외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협약 제3조), 생명권 및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능력발달(evolutionary capacities)(협약 제5조)에서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종결 연령(협약 제28조), 근로가능 연령(협약 제32조), 형사 책임 연령(협약 제40조)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각 국가들이 아동의 연령의 정의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sexual consent), 근로가능 연령, 형사 책임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히 이를 협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40개 조항 분석 중 일부 내용을 예로 제시함.

(1) 아동기(childhood)의 시점(始點, starting point)

1924년 및 1959년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기의 시점 및 종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1959년 선언의 서문에서 “아동은, 출생 후는 물론 전에도(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미성숙으로 해서,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안전지킴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약 초안을 준비하면서, 실무그룹에서 각 국가들이 아동기를 출생 전까지 확대한다면 낙태 및 가족계획 등과 같은 예민한 문제로 인해 협약의 비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아동기의 시점을 출생 후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다. 협약은 대부분의 조문을 명확하게 출생 후 아동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고유의 권리에 대해 각 국가의 고유의 법률로 인해 이 조문에 대해 선언(宣言, declaration) 혹은 유보(留保, reservation)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는 “아동은 수정된 순간부터 18세에 도달한 때까지의 사람을 뜻한다(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up to the age of 18).”고 선언한 바 있다.

살아있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과 산모의 결정권에 대한 논란은 낙태의 허용 여부와 맞물려 여전히 예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출산 조절 혹은 가족계획 정책, 우생학적 경향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협약 초안 과정에서 실무 그룹은 협약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합의를 위해 아동기의 시점을 출생 후라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태아에 대해 협약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이들은 태아의 생존성(fetal viability)을 기준으로 임신 24주 이후(태아가 태어나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생명체로 인정하자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전종관, 2014, p158).

(2) 아동기의 종결(the end of childhood)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협약에서 아동은 어떤 특별한 권리의 획득(예를 들면 선거권 등)이나 혹은 특별한 보호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부여를 어느 시점에서 시작할 것인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상실하도록 할 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면 아동기의 시점과 마찬가지로 종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기내에서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논란도 많다. 그에 대해 현재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기(adolescence)”에 대한 일반 논평 초안 기획문에서 잠정적으로 청소년기를 ‘사춘기(puberty)에서부터 18세까지에 이르는 아동기의 특수집단(a specific group of children)’으로 규정하고 있다(OHCHR, 2015)³⁾. 물론 이와 유사하게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를 ‘출생부터 8세까지 아동’으로 제시하였다(CRC/C/GC/7⁴⁾).

통상적으로 아동(child)을 지칭하는 용어로 신생아(infant), 영/유아, 애/아기(baby), 어린이, 소년/소녀(boy/girl)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아동 및 성인(major, adult)과 구분하여 흔히 청소년(adolescent)은 미성년(minor), 청년(youth), 젊은이(young person) 등이 사용되었다.

〈표 II-1〉 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연령”에 관련한 주제들

- ▶ 부모의 동의 없는 법적 및 의학적 상담
- ▶ 부모의 동의 없는 의학적 처치 혹은 수술
- ▶ 의무 교육의 종결
- ▶ 고용 혹은 근로 연령(위험한 노동, 파트타임 및 풀타임 노동 포함)
- ▶ 결혼
- ▶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 ▶ 군대에 자발적 입대
- ▶ 군대 징병
- ▶ 적대행위에 참가
- ▶ 형사 능력
- ▶ 자유의 박탈(체포, 구금, 수감, 수용소 및 복지/보건 시설 배치 등)
- ▶ 사형 및 종신형
- ▶ 법정 증언(민사 및 형사 사건)

3)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allRightsofAdolescents.aspx>

4) 유엔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문건번호 양식 사용: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의 경우
→CRC/C/GC/7

2) 법과 정책

(1) 아동 및 관련 개념을 사용하는 다양한 법률

① 아동을 정의하는 용어 및 연령기준의 복잡성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동 관련 법제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차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현재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에서는 제3조 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관련한 많은 법률이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아동과 함께 혼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및 개념으로 “청소년”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3조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다소 융통성 있는 청소년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 등도 아동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듯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와 더불어 같은 용어도 개별법상 연령기준이 달리 설정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등의 처리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법률들이 있다.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와 유사하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4세를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규정은 그 기준과 범위가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복잡다단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국내법상 아동 관련 정의

용어		기준연령	대표적인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기본법」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연 19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8세 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아동과 청소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연소자		-	헌법	
미성년자		19세	「민법」	
		16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형사 미성년자		14세	「형법」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18 내지 19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5세 미만 어린이	「화장품법」	
소년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촉범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10세 이상		
소년		15세 미만	「근로기준법」	
영유아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모자보건법」
		신생아	출생 후 28일	
				6세 미만 취학 전
유아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장애영아		만 3세 미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아		24개월 이하		「아이돌봄 지원법」

② 법체계 내에서의 혼선

유사한 용어를 개별법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혼선도 문제이지만, 하나의 법률 안에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가 등장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에서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에서는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같은 법률 조문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 헌법상 이동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모든 국민”에 더하여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구체적으로 특별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혹은 어린이”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 혹은 법률가들은 “청소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각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헌법의 개정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명칭들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소자(年少者)”가 있는데, 놀랍게도 헌법 제32조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유일하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공연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어 연소자 또한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

(3) 기타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용어 혹은 관행적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

① 여러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법률들

먼저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여러 개념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 「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지방자치법」에서 아동·청소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영유아·아동” 등 여러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② 명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률

「병역법」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제8조(제1국민역 편입)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을, 제11조(징병검사)에서는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하여 19세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성년으로 간주하여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고,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인 경우 25세 이상, 대통령은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별도의 정의 없이 18세 미만의 자(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3) 국내 실태

아동기의 시점(始點, starting point)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하지만 낙태(임공 임신중절)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학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기의 종점(終點, ending point)은 다양한 형태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어려움 점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부처간 분리에서 오는 사항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는 「청소년기본법」으로 하여 기존의 헌법(연소자), 민법(미성년자), 형법(형사미성년자 혹은 소년)에서 명칭 혹은 구체적인 연령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대략 19세 미만이라는 합의점을 가지는데,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24세까지로 확대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관련법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라는 복합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1) 성년 기준

성년의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위원회에서 인지한 <표 II-3>과 같은 여러 주제들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보면 먼저 민사상 권리로 결혼,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고용 혹은 근로, 부모의 동의 없는 법적 및 의학적 상담(처치 혹은 수술), 추가로 경제적 활동 등이다.

국내 실태를 보면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에서 19세 가 되었을 때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활동 및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도 비록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19세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와 관련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역법」에서의 병역 의무부여,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권 획득,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발부가능 등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는다.

(2) 법정최저연령

법정최저연령은 이미 앞에서 국내 법률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법률이 지

향하는 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용어 또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활동이나 대부분의 민사상 권리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연소자) 및 「민법」을 기본으로 하여 19세 미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결혼,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고용 혹은 근로, 부모의 동의 없는 법적 및 의학적 상담(처치 혹은 수술), 경제적 활동 등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ity)”에 대해 민법은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학생인 미성년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한 미성년자”, 어선법에서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법」, 「소년법」 등 형사적 책임능력 및 법정 증언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민사적 접근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미성년자는 14세미만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여 일반 형법보다는 소년법의 적용으로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몇 년 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관련 논의가 첨예하게 있었던데 비해 국내에서는 별 논의 없이 하향 조정되어 뒤늦었지만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 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화장품법」에서 만 5세 미만, 「위치정보법」에서의 8세 이하, 「성폭력관련법」 및 「도로교통법」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미만, 「인체조직법」의 16세 미만 등이 확고한 근거에 입각한 기준인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생아부터 영아, 유아, 영유아 등의 어린 연령의 아동에 대한 기준 또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법률의 필요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지만, 18세 미만 혹은 19세 미만, 고등학생을 포함함으로써 연령 구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교육관련 법률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 혹은 규제에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4) 외국 입법례

일본의 경우 성년의 연령기준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유엔으로부터 이에 대한 권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2010년 5월 18일 시행하였다.

이후 2009년 7월 법제심의회(法制審議會)의 민법성년연령부회에서 민법 개정을 통한 18세로의 하향 조정을 적당한 시점에 하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외에 일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1)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는 점, 2)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죄가 성립되는 대상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한 점, 3)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최저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점, 4) 18세 미만의 자녀가 의료적 상담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점, 5) 18세 미만의 자녀가 단체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외에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아동”, “소년”, “청소년”의 용어가 여러 연령 정의를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廣澤, 2009, pp56~57). 형사책임(criminal responsibility)과 관련하여 각국이 규정하는 기준이 <표 II-3>와 같이 다양하다(Van den Sloot & Vermeiren, 2012).

유책성의 기준뿐 아니라, 형사적 절차에 있어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국가를 비교해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청소년형사법(juvenile criminal law)」이 12~18세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결국 소년교도소 수용(최대 2년까지)을 포함해서 형벌(punishment)이 가해질 수 있고, 전과기록(personal penal record)이 남을 수도 있다(성범죄의 경우는 평생동안도 가능하다). 반면 벨기에의 경우 18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형사법」 대신 「사회보호법(civil protection law)」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오직 수용(detention)을 포함한 보호만이 가능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물론 두 나라 모두 범죄의 심각성 및 성숙도에 따라 특별한 경우 16세~17세 사이의 미성년자도 성인으로 기소될(convicted) 수도 있다(Van den Sloot & Vermeiren, 2012).

〈표 II-3〉 형사책임 연령 기준

연령(세)	국가
7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뉴욕(미국), 남아프리카
8	스코틀랜드, 스리랑카, 잠비아
10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위스, 웨일스, 텍사스(미국)
11	일본
12	캐나다, 네덜란드, 터키
13	알제리, 그리스, 과테말라
14	불가리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15	체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6	아르헨티나, Cape Verde

5) 시사점

(1) 아동의 정의에서 시점(始點)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유엔권리협약을 비준하는데 있어 여러 국가가 아동을 수태된 때 혹은 태아기 등으로부터 규정하는 자국의 법률 혹은 관습에 따라 유보(留保, reservation)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낙태 허용시점, 태아의 생명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향적인 학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2) 아동의 정의(定義, definition)와 관련해서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법률, 정책에서도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

가. 헌법에 규정된 바가 모호하거나 부적절하다. 앞선 논의에서와 같이 헌법은 ‘연소자’라고 하위 법률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이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약자들을 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소년’이라고 하여 정작 특별보호가 더 절실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들에 대해 부적

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부 학자 혹은 법률가들은 ‘청소년’이라는 용어 속에 ‘아동’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하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개헌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 법과 정책을 살펴보는 논의에서 아동,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등 매우 다양한 용어와 정의, 기준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개별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법률은 그 목적에 맞도록 기준을 일부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아동 혹은 청소년의 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각 법률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특정 영역 혹은 주요 법률과 관련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법정최저연령에 대해 주요 영역 혹은 관련 법률 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조문의 의미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인지한 몇 가지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논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결혼,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고용 혹은 근로, 부모의 동의 없는 법적 및 의학적 상담(처치 혹은 수술), 의무 교육의 범위, 군대 입대, 전투에 참여, 형사 능력 및 법정 증언, 자유의 박탈, 사형 및 종신형 등이다. 하지만 국내 법률의 검토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 제공, 장기 제공, 학자금 대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혹은 기관에 대한 각종 혜택 및 규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 혹은 규제 등 위원회에서 제시하지 않은 많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혹은 주요 영역별로 앞에서 논의한 아동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검토가 절실히 요망된다.

2. 제 2 조 차별금지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문의 의미

본 조문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존중할 것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협약이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었다(유니세프, 2007). 이 조항과 관련하여(여기서) ‘차별’은 무엇이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 권리 실현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 차별의 정의

인권 법률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직적 기능을 갖고 있다. 법은 그 대상을 해방하거나 보호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법 또한 그렇다. 법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개인을 자유롭게 하며, 동시에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황옥경, 2011). 이렇기 때문에 법률이 작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실현하려는 목적과 사용된 수단,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 정당한 균형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다(Breen,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차별의 개념을 정

의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할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관한 정의를 밝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출신 민족 및 사회계층, 빈부, 출생 및 기타에 의한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2조 차별금지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협약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차별금지 문제를 언제나 제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협약 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서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협약의 차별금지 의무에 따라 협약을 비준한 각 국은 아동권리 보장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 또는 아동집단을 적극 파악해야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차별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려면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그리고 자원분배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 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할하는 인권위원회는 1989년 일반논평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조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 그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24조 1항은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교육적 상황에서의 차별금지와 교육을 통한 차별 해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을 “협약 제2조상에 열거된 여하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 특히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에서 유엔아동

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육기회를 제한받는 것은 일차적으로 협약 제28조과 관련된 문제이며 제29조 1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CRC/GC/2001/1 para. 10).”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종 및 이와 관련된 차별이 창궐하는 곳에는 무지나 인종, 민족, 문화, 언어 기타 어떠한 형태든 자기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편견을 악용하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있기 십상이다. 이상의 해악에 확실하고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해독제는 협약 제 21조 1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교육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에는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차원의 차별과 편견에 도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리하여 교육은 차별의 벽과 해악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CRC/GC/2001/1 para. 11, 협약 제29조 참조).”

② 영유아기에 대한 차별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기 연령차별에 주목하고 “영유아기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영유아기 권리 보장을 위해 차별금지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협약 제2조는 유년기의 아동이 여하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됨을 뜻하고 있다. 법이 유년기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유년기의 아동은 특별히 차별받을 위험이 큰 것이, 이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남의 도움을 얻어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 제2조는 또한 특정 집단의 아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차별의 형태는 다양해서 영양수준의 축소, 보호와 관심의 미흡, 놀이, 학습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한 또는 감정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금지 등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차별은 또한 가혹한 처우 또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통한 착취와 학대로 나타나기도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GC/7/Rev.1 para.11).”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시기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접근권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는 차별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크게 표명하였다. 보건, 교육, 복지 서비스가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영유아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약당사국은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긴급한 서비스가 아동과 가족의 배경이나 상황 등에 따라

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지를 감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영유아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과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2) 차이의 존중

: 차별금지 '똑같은 대우'를 의미하지 않음

차별금지의 원칙은 개별아동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과 배치하지 않는다. 협약은 전문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권리 위원회는 혜택 받지 못한 취약아동들에게 특별할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협약은 차별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22조의 난민아동과 23조의 장애아동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차별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권리 침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의 조항은 아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라는 차별금지 원칙이 ‘똑같은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 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 역시 1989년 일반논평에서 “대등한 위치에서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모든 사안에서 같은 처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원리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때로 “소수자 보호정책을 채택하여 규약이 금지한 차별을 유발하였거나 차별에 조력한 여러 조건을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는 “차별화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또한 그 지향하는 바가 규약 상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우의 차별화가 모두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8, 1989, HRI/GEN/Rev.8 paras. 7~13 pp. 187, 188).

(3) 차별금지의 이행

: ‘법 앞의 평등’과 ‘차별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

아동위원회는 언제나 실행 특히 차별금지에 있어 “적극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점을 1993년 위원회에 제출된 최초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부류의 아동, 특히 어린 여아에 대한 차별철폐에 더욱 적극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볼리비아, CRC/C/15/Add.1, para. 14).” 제2조의 이행이 여타의 모든 조항의 이행에 통합되어 명시된 모든 권리가 모든아동에게 하등 차별도 없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는 1989년 일반논평에서 차별의 적용과 이행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차별의 금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이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동시에 의미하며 권리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이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상의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출신 민족 및 사회계층, 빈부, 출생 및 기타에 의한 지위 등 여하한 근거에 바탕하거나 모든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의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구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협약 제2조와 이 조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차별방지는 협약당사국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의무이다. 차별금지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이 요구되는데 검열, 전략기획, 입법, 감시, 인식 제고, 교육, 홍보 등이 포함된다.

국제법상 “존중”이라 함은 협약당사국이 “협약 상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장”은 “존중”에서 훨씬 더 권리에 접근하는 개념이다. 이는 “보장”의 의미는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즐기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뜻하기 때문이다(Phillip, 1991).

2) 법과 정책 현황과 평가

차별하지 않는 것과 평등에 관한 국내외의 법률을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차별에 관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일관성 없는 대우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른 대접을 해 왔고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연령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하는 기준이지만 차별적인 대우의 근원이 될 수 있다(Breen, 2004, 황옥경 2011재인용).

아동에 대한 법과 정책의 차별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4항에서 아동이 미적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5년에야 비로소 수립·발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과정책을 망라하여 협약 2조의 아동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을 강조해 왔다.

(1) 헌법상 ‘아동’ 미 적시

아동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차별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법은 항상 아동과 성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은 아동과 성인의 처우를 구별해왔다. 이러한 법률상 처우의 구분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을 내포한다((Breen, 2002). 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통용되었고 이는 오히려 차별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이때 권리 제한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권리의 보유자간 특히 부모와 아동권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규제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이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한다. 사람들을 성별이나 소속 민족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Breen, 2006, 황옥경, 2011재인용).

아동에 대한 법적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볼 경우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인구는 9,33만명으로 18.6%에 이르는 “아동”을 헌법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아동”에 대한 법적 차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2010년 1월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에서 아동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아동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선택(2010)은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순히 헌법전내에 ‘아동’이라는 용어를 편입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의 지위 내지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안을 제안하였다(황옥경, 2011 재인용).

(2) 국가수준 아동기본계획의 뒤늦은 수립

정부는 국가수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201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수립하였다. 이는 지난 년동안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꾸준히 국내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운용을 모색해 온 것과 대조를 이룬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을 9세 아동부터 포함한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영유아기 정책은 보육유아교육정책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국가 수준의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를 포괄하는 국가수준의 정책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보육종합대책”,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인성교육종합계획”,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이 있다. 아동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동결핍지수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특히 정기적인 취미활동 결핍률이 가장 높았으며 9~11세 아동의 학원과외교습활동이 2008년 28.5%의 아동이던 것에서 49.6%로 증가하였다. 영유아의 16.2%와 초중고생의 77.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 중독 등의 위험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양육지원 방안 마련 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공교육 중심의 인적자본 육성 등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아동이 처한 급격한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아동기본계획의 부재는 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차별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의사결정과정에서 차별

(4)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2015년 발표된 아동 기본계획은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아동보호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에 대한 정기조사 및 이의 결과를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아동차별을 예방, 억제,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3) 국내의 실태

(1) 차별의 주요인 : 성적, 외모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은 성(26.1%), 연령(24.7%), 학교 성적(19.7%), 신체/외모적 조건(18.2%)에 따른 차별경험이 20% 내외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에 따른 차별(26.7%)은 제외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아동보다 높은 40%의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한 황옥경(2011)의 연구에서 아동은 아동은 외모나 신체조건과 학교성적, 그리고 연령에 에 의한 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가정형편이나 주거지역, 장애 또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차별을 낮게 인식하였다. 아동은 ‘공부잘할 때’ ‘성적이 오를때’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동 중에는 ‘뭘 시키거나 요구할 때’, ‘인터넷상에서’, ‘PC방에 갔을 때’, ‘호텔, 비행기, 음식점, 등에서 특별한 손님이 될 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경제력과 관련된 진술이 많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을때’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주관적 질문에는 모든 조사대상 아동집단에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 차별의 여러 사유 (순위의 의미 없음)
- 신체조건/외모
 - 학업성적
 - 성별
 - 연령
 - 주거지역
 - 가정배경
 - 장애유무
 - 문제행동

·출처: 황옥경(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차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정부의 3,4차 통합보고서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등록 이주 부모를 둔 아동의 출생등록과 교육권 차별

201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이주아동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그 혹은 그 부모의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거주국 국적 아동과동일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들은 신속하게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고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다(황필규, 2915).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지내며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유엔인권기구는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민족 간 결합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과 국민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인종차별금지협약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하고 국제인권조약상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며, 직·간접적인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이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황필규, 2015).

② 학교밖 아동⁵⁾의 보호 차별⁶⁾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차별은 지역주민, 고용주, 직장동료로부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강조한 신문기사(예: 김수혜, 2013. 08. 09)는 학교 밖 청소년의 낮은 취업지위(예: 저임금 단순직, 무노동)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 한 명당 645만원의 손실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들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도도 제안된 바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는 동시에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다. 안정된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누리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인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근무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차별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낮 시간에 교복을 입지 않고 밖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었다. 또한,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 집단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다음 인터뷰 내용은 그 중 한 예를 보여준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교밖아동의 주 연령층은 고등학교 시기로 주로 청소년으로 지칭되고 있어 이 부분은 ‘아동’대신 ‘청소년’을 사용함
 6) 한국아동권리학회(2015). 아동복지실천현장과 아동권리 레토릭, 정선영, 학교밖 아동 교육과학사의 내용 중 일부분.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복학해서 그동안 절 많이 지켜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넌 못 버틸 거야’, ‘넌 안 돼’, 이런 말을 해서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서 다시 다녀보려고 복학을 했는데, …(중략)…그래도 애들하고는 금방 친해져서 잘 어울렸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만날 그냥 학교에 시간만 때우러 가는 것 같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말인지 모르니까……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만날 지각하다보면 그냥 학교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예 검정고시를 볼 생각으로 그만 뒀어요.)⁸⁾

정규 교육과정을 떠난 청소년의 절반 내지 2/3이상이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1) 복교, 2) 대안학교, 3) 검정고시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현 상황에서는 이들의 학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교육부는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에서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연중 수시로 희망학교에 복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타학교 출신 복학생의 재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를 떠난 중학생의 50%와 고등학생의 17%가 학교로 복귀하지만(국회 내부자료, 2013) 복교한 청소년들의 20%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6).

학교밖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참여기회 역시 차별받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조직·운영되는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자격은 주로 ‘관내 중·고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서조차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아동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를 떠난 경우에는 복귀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41조는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7) 정해숙 외 (2011)의 인터뷰 전사자료에서 발췌.

8) 정해숙 외 (2011)의 인터뷰 전사자료에서 발췌.

③ 청소년 미혼모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0.07%수준이다. 2013년 이후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증가추세가 될 것이며 2015년 16,14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청소년한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청소년한부모가 있으며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학업소요비용 및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출결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원이 요구된다.

(3) 차별금지법 재정 난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협약 2조네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 국회 및 민간단체 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다. 2007년 10월과 2010년 등에 걸쳐 법무부는 성별, 장애, 인종 등 특정집단이나 개인에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고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역시 성적지향에 반대하는 여론대문에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4)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가족관련법(zum Kindschaftsrecht)의 개정은 1997년 12월 16일에 이루어졌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 법률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련하여 혼인 가정과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독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보고서, 2014).

5) 시사점

Eckelaar(1989)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탄생되기 이전 아동이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법이 실패했으며, “미성년자의 지위는 봉건제도의 마지막 유물…”이라고 비판하였다(황옥경, 2011 재인용). 아동차별은 여성이나 장애인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은 위험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어려움을 피하는데 취약하여 자신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발달해 가는 아동기의 발달적 속성(Breen, 2006; Holt, 1993) 때문이다.

아동이 연령 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성장해가면서 아동이란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언제나 아동이라는 분류가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분류는 항상 차별 대우를 낳게 되며(Freedman 2003), 아동의 권리는 언제나 제한 당할 것이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이재연, 2010).

협약 2조항의 비차별 조항은 모든 아동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더불어 모든아동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비차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아동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입법화하고 차별사례를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은 법률에서 차별금지를 법 제정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차별사례를 법원에서 다루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나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동의 자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와 아동의 자율성이 빚어내는 갈등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의해 다소 해소될 수 있다(황옥경,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관습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별에 대한 연구, 종합전략의 개발, 홍보, 정책결정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비차별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차별을 간혹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차별적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아, 장애아, 집없는거리 아동, 혼인의 출생자 아동 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아동, 학대피해아동, 근로아동, 학교밖아동, 이주가정의 아동등은 다른 아동들과 다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3. 제 3조 최선의 이익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문의 의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3조 1항을 제2조, 제6조, 제12조와 함께 일반원칙에 포함한다.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개념은 주로 영미의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양육권 결정과 관련하여 발전되었고 1970년대 이래 이 개념은 아동권리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BIC라는 약어로 자주 쓰임). 이 원칙은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최선의 이익이 일반원칙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해석이나 이 원칙의 적용이 협약 상 보장된 다른 개별 권리보다 우선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항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

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후속 일반논평들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켜 왔다. 제3조 2항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를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2조 1항 및 제4조와 함께 제3조 2항은 국가의 전반적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3항은 모든 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 및 아동에 대한 편의 역시 적절한 기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Bulletin of Human Rights*은 제3조 제2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포괄규정의 지위에서 그것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항은 일반적 또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한다고 명시된 의무에는 그 한계가 없으며 당사국의 의무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었다. 의무를 표현하는 ‘보장’의 의미는 매우 강력해서 소극적 및 적극적 의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보호와 배려”라는 말도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부정적 용어(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같은)로 표현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총체적 이상으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Alston, 1991).

3조 3항은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설비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여러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특정서비스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 분야 시설 종사자의 적정수와 적합성 및 효과적 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배려와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다른 규정, 예를 들면 차별금지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견해와 기타 시민적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든 또는 자원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든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모든 기관이나 편의에 적용되는 입법 구조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이 점검은 위탁이든 보육이든 양육문제, 보건, 교육, 교정시설 등 모든 서비스가 그 대상이 된다. 충분히 독립적인 검사 및 관찰과 함께 이 모든 사항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기관들의 유자격 종사자부족, 훈련부족, 모니터링-감독 부족에 대해 자주 언급해왔다

(1) 최선의 이익의 개념

아동최선의 이익 개념은 아동권리협약 이전에 이미 각국의 입법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고 국제인권문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1959년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법률 기타에서 특별보호와 기회 그리고 편의를 누림으로써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고 품위 있게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디에도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일반논평에서 아동의 이익이 부부 별거나 이혼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No.19, HRI/GEN/1/Rev.8, p.185, 189).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일반원칙의 반열로 격상시킨 조항 간(제2조, 3조, 6조 및 12조)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차별금지의 원칙, 생존 및 발달의 극대화 원칙 그리고 아동관점의 존중원칙 등은 모두, 집단으로서 최선의 아동이익은 물론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아동이익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최선의 이익의 판단

협약이나 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하여 제시된 최선의이익을 판단하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민간기구, 부모 등에 의한 모든 행위를 망라하여 최선의 이익원칙을 적용한다.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원칙의 표현이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국가의 행위를 넘어 민간기구까지 포함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일반논평과 협정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조1항이 협정 제4조에서 규정하

는 협약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전반적 의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선의 아동이익은 국가차원의 아동계획이나 정책에, 그리고 특히 모든 차원의 예산 책정이나 자원배분 활동을 포함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활동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기술하고 있다.

“최선의 이익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생존, 성장 및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에는 아동의 권리실현에 일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기타 보호자의 행위도 포함된다”

② 개별적 존재로서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

“유아기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 개별아동으로서 집단구성으로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 (a) 개별아동의 최선이익. 아동의 보호, 건강, 교육 기타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것이 부모의 결정이든 전문가나 기타 아동에 대한 책임자의 결정이든, 최선의이익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어린 아동이 모든 법절차에서 아동의이익을 대변하는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대표되고,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이 경청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 (b) 집단 및 주민으로서 어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 정책개발, 행정적 사법적 결정 및 서비스 규정은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해야한다. 이는 아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를 들면, 의료, 보육제도 또는교육)는 물론 어린 아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를 들어 환경, 주거 또는 교통 관련)도 포함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GC/7/Rev.1 para. 13).

③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적, 양육, 문화적 언어적 배경, 특정 취약한 요소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위원회는 협정 제3조 1항 규정의 함의를 비 동반 및 가정이탈 아동에 대한 국가의 처

리와 이들에 대한 장단기 해법 추구하고 관련하여 검토했다. 2005년의 “원 거주국 밖의 비동반 및 가정이탈 아동처리”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위원회는 원거주지역 이탈 아동에게 이 원칙이 거주지 이탈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준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국적, 양육, 문화적 언어적 배경 취약요소 등을 망라하여 고려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몇 가지 최선의 이익 판단 원칙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었다.

- 부모로부터의 격리: 아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적법한 기관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격리가 “최선의 아동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사국은 “최선의 아동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양부모와 개인적 관계와 직접 접촉을 유지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제9조 1항, 3항).
- 부모로서의 의무: 부모 둘 다 아동의 양육과 “최선의 아동이익”을 항상 염두에 둘 일차 의무를 진다(제18조 1항).
- 가정환경의 박탈: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에서 격리되었거나 “또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은 가정 밖에 있어야 보장되는 경우”의 아동은 특별보호와 조력을 받는다(제20조).
- 입양: 당사국은 “최선의 아동이익이 지상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21조).
- 자유의 제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아동이익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제37조 c항).
- 청소년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대한 법원청문: 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아동이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참석해야 한다(제40조(2)(b)(iii)항).

(3) ‘최우선적 고려’는 최선의 이익이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최우선적 고려하는 의미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약수립과정에서 이 조항에서 아동의 최선이 이익이 “유일한 최우선적 고려” 또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조 1항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 속에는 다른 권리주체들이 동등한 권리로 주장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호 상반된 인권 문제가, 예를 들어, 개별아동 간, 서로 다른 아동집단 간 그리고 아동과 성인 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최선의 이익”이라는 구절이 사용된 협약의 조항은 해당조항의 특정 상황에서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유일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특히 제21조 입양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명백히 기술돼있다.

(4) 최선의 이익 원칙 적용의 문화상대주의의 극복

국가는 최선의 이익을 지나친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최선의 이익’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원용하여 협상에 의해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통 관례와 난폭한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 2006년도 “체벌 기타 잔인 또는 비인간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8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가입국 보고서를 검토하는 도중, 아동권리위원회가 특정국들의 체벌철폐 문제를 거론하자, 가입국 대표들은 때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또는 “적당한” 체벌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일반원리로서,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1항)는 아동협정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아동협정은 또한, 제18조에서, 최선의 아동이익은 부모의 기본관심사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이익에 대한 해석은 아동협정과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야하며, 이는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아동의 관점에 정당하게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인간적 존엄 및 육체적으로 온전할 권리와 상충하는 체벌 기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처벌을 포함하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GC/8, para. 26).

(5) 최선의 이익의 입법 반영

위원회는 일관되게 제3조가, 협약상의 여타 일반원칙들과 같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제4조, 42조, 44조 제6항).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선의 이익원칙이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3,4차 통합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모든 사업, 행정결정의 법적추론도 이원칙에 기반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

(6) 최선의 이익과 영향평가, 그리고 모니터링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국내법에 기타일반 원칙과 함께 제3조 1항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술하기를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전 정부, 의회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및 기구는 자신들의 결정이나 행위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영향 받고 있고 영향 받게 될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야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행위로는 직접 아동문제와는 관련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입법안, 현행법규, 정책, 행정행위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CRC/GC/2003/5, para. 12).”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어서 아동영향 예측 및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제3조 1항)되고 아동협약의 모든 규정이 모든 차원의 정부 입법 활동, 정책 및 시행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영향 예측(아동과 아동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입법안, 정책, 예산배정의 영향예측)과 아동영향 평가(시행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모든 차원의 정부활동에서, 그리고 가능한 정책개발 초기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

“자체 모니터링 및 자기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를 들어 의회의 각 위원회, 비정부기관, 학술 기관, 전문가, 청소년단체 및 독립된 인권기관이독자적으로 이행의 진척을 감시하는 것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입법부나 일반대중에 공식영향평가의 제출이나 발표 의무화 입법을 채택한 몇몇 국가를 치하하는 바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협정 제3조 1항 준수를 보장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정책결정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와 아동권의 존중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CRC/GC/2003/5, paras. 45~47).”

2) 법과 정책 현황과 평가

정부는 협약의 국내이행에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반복되면서 협약의 내용 특히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국내법과 정책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조항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 법과정책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제 3조항은 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다양한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고 각 사안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아동 최선이 이익을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므로 최선의 이익의 법과 정책 반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까다롭다.

한편, 전반적으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국내법과 정책에 선언적 수준에서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다. 사실상 국내법률은 이 개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개혁이 동반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1)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반영, 그러나 일부 법률의 선언적 수준에서의 명시

법적으로 최선의 이익의 의미를 내포한 몇몇 법률이 있다. 협약조항 유보의 철회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년 개정된 민법은 837조 2항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였다. 2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2조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역시 제 4조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며 영상정보처리 기의 설치, 운영시 보호소년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관련법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어떤 평가과정을 거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보호소년 드으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법절차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의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 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되었다.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미반영

청소년관련법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과 기업, 사업주 등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사결정의 명백한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3) 아동 최선의 이익에 명백하게 위배된 법 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놀이터 미설치 허가 규정

3조3항의 모든 아동관련 기관과 시설 및 아동에 대한 편의가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아동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시설 규정과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시설규정과 교사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15조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보육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안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은 유치원교사 자격과 격차가 있어 동일연령 아동에대한 전문인력의 차별적 배치를 법에서 타당화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15 2항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3) 국내의 실태

(1) 아동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의 취약

① 예산평가의 부재

3조 2항은 협약비준국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보고서에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자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19/b)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예산 평가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아동예산 격차로 인한 아동 삶의 편차가 현저하여 아동예산의 중앙정부 예산편입에 대한 관련자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② 영향평가의 부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예산의 사용이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능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19/c)

2015년 발표된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영향평가지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시 시행근거를 포함하고,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2017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나 있다.

③ 아동·청소년관련부처의 이원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정부조직 중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동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의 통합내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화를 이룰 것을 권고하였다.

(2) 헤이그협약 서명이후 비준 동의안 미처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정부에 헤이그협약 비준을 권고한 이후 2013년 5월 2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덜란드⁹⁾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

9) 협약서명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진행된 이유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주재한 네덜란드 협약의 비준서 수탁국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이후 헤이그협약의 국회비준동의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1년 8월 4일 종래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법이 2012년 8월5일 발효되는 등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베이비 박스 영아의 증가 및 입양관련기관, 아동과 부모간 이익의 충돌로 인한 침해한 갈등과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 와중에 헤이그협약의 비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명한 헤이그협약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최선의 이익을 우선하여 아동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에서 입양국가나 기관 혹은 입양부모 및 친생부모의 편의나 의견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상충될 경우 아동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헤이그협약은 분명히 하고 있다. 미혼 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아동의 정보를 변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양정보를 불법으로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아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헤이그협약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황옥경, 2013).

4) 외국의 입법례

2013년 3월 자녀양육권 법률의 개정으로 독일의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공동양육권을 가정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은 법원이 공동양육권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배한다고 믿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없음도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s://andreasmoser.wordpress.com/2012/09/19/10-faq-child-custody-law-germany/>
<https://andreasmoser.wordpress.com/2013/07/23/child-custody-germany-may-2013/>

5) 시사점

아동권리에 대한 최근의 정부와 사회일각의 관심은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에 아동최선의 이익 개념 혹은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최선의 이익개념이 반영된 일부 법률은 아동에 대한 조사, 진술환경의 변화 등을 이끌어 내었지만 아동복지법의 경우는 다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요구된다.

먼저, 최선이 이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아동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 개입된 어른들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도록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최선의 이익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동관련 행정업무 담당자와 입안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에 대한 재정, 물적 자원의 최대한 투입의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영향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영향평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이다. 법률이나 정책 입안전과 실행 이후 모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은 정책과 법률평가의 기본 준거가 된다.

Ⅲ.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인터넷 서베이조사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전문가는 총 37명으로, 응답자 대상 유형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서베이조사 응답자 대상 유형

소속	인원수
아동·청소년학과 전공 교수	8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법학과 교수	2
아동·청소년 관련 국책연구소	7
검찰	1
교육청	1
아동보호전문기관	1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
아동보육기관 종사자	3
아동 NGO 종사자	10

2) 조사내용

본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정부 및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이행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총 9가지 예시 중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이행수준 측정과 관련하여 협약의 조항들을 총 12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CRIN(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의 아동권리협약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표 Ⅲ-2〉와 같으며, 협약의 38조(아동의 무력분쟁), 41조-54조의 이행수준 측정은 제외하였다.

〈표 Ⅲ-2〉 아동권리협약의 12개 영역 구분

	영역	해당 조항
1	아동의 정의	1조
2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조, 3조, 6조(1), 7조, 8조
3	협약의 이행(Implementation)	4조, 42조, 44조
4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5	가족과 대안양육(Family and alternative care)	5조, 9조, 10조, 18조, 19조, 20조, 21조
6	건강과 복지(Health and welfare)	6조(2), 24조, 33조
7	교육 및 문화적 권리(Education and cultural right)	28조, 29조, 30조, 31조
8	정의(Justice)	40조
9	폭력(Violence)	36조, 37조
10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26조, 27조, 32조
11	취약환경의 아동(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	22조, 23조, 25조, 30조
12	성적 착취와 학대(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1조, 34조, 35조, 39조

아동권리협약의 제도적·사회적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총 9가지의 예시가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방해요인 예시는 글자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의도된 방향에 따라 조사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방해요인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 수준 향상에 방해가 되는 한국사회의 요소들(〈표 Ⅲ-4〉 참조)을 문헌조사에 따라 정리한 뒤, 이를 아동권리 관련 내용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3〉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방해요인 예시

1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부족
2	아동권리 관련 대중의 이해 부족
3	아동권리 관련 예산 및 자원 부족
4	아동에 대한 가부장적 문화 및 인식
5	미디어의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 부족
6	아동권리 민간단체의 수적 부족 및 열악한 지원
7	아동권리 관련 법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기구의 부족
8	정책 입안자들의 아동권리 실현에 관한 정치적 의지 부족
9	아동권리 관련 연구 및 조사 데이터의 부족 (예: 아동백서, 아동영향평가 등)

〈표 Ⅲ-4〉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방해요인 예시

1	가부장적 유교 문화
2	미디어, 정치적 견해 및 여론에 만연한 인권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인권거부감)
3	인권친화적 기업문화의 미확산
4	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부족
5	인권 감수성과 지식을 고루 지닌 전문가 부족
6	인권관련 단체의 수적 부족 및 인권 단체에 대한 열악한 지원
7	인권 관련 규정 미비 또는 보완의 필요성 존재
8	인권 관련 재정적·물적 자원 부족(국가의 예산 투입 저조)
9	인권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지 부족
10	국가인권위원회의 낮은 위상 및 영향력
11	객관적인 기준, 연구 자료 및 조사 데이터 부족
12	이중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의 어려움

2. 정부 및 시민사회의 조항별 이행수준 및 방해요인

1)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수준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 분석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행수준을 시민사회에서의 이행수준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협약 영역으로는 성적착취와 학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이행이 미진한 부분은 아동의 정의에 관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사회 이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건강과 복지, 성적착취와 학대 및 일반원칙의 영역에서 협약 이행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아동의 정의와 협약의 이행 영역에 대한 이행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표 Ⅲ-5〉 참조).

〈표 Ⅲ-5〉 12개 영역 별 이행수준 평균

영역	전체 평균	정부	시민사회
성적착취와 학대	2.93	3.18	2.67
건강과 복지	2.83	2.96	2.70
경제적 권리	2.79	3.04	2.54
폭력	2.76	2.91	2.61
일반원칙	2.71	2.77	2.66
가족과 대안양육	2.64	2.71	2.58
취약환경의 아동	2.57	2.68	2.47
시민적/정치적 권리	2.52	2.56	2.48
정의 (justice)	2.47	2.49	2.45
교육 및 문화적 권리	2.43	2.49	2.36
아동의 정의	1.97	1.98	1.95
협약의 이행	1.83	2.07	1.59

다음은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국내이행의 전반적인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이다. 정부 이행의 방해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된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정치적 의지’

였고, 다음으로 ‘예산 및 자원부족’, ‘아동권리에 관련된 법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기구의 부족’이었다. 시민사회의 아동권리협약 국내이행의 주요한 방해요인으로는 ‘대중의 이해 부족’, ‘아동권리 관련 예산 및 자원 부족’, ‘정치적 의지 부족’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제도적·사회적 이행을 위하여 강력한 정치적 의지, 법적 영향력, 충분한 예산과 자원을 갖추고 아동권리를 교육 및 홍보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III-6〉 참조).

〈표 III-6〉 방해요인 평균빈도 상위 3개

정부 이행 방해요인	
1	정책 입안자들의 아동권리 실현에 관한 정치적 의지 부족
2	아동권리 관련 예산 및 자원 부족
3	아동권리 관련 법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기구의 부족
시민사회 이행 방해요인	
1	아동권리 관련 대중의 이해 부족
2	아동권리 관련 예산 및 자원 부족
3	정책 입안자들의 아동권리 실현에 관한 정치적 의지 부족

IV.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향상 방안

1.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적용 향상 방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이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의 정합성을 위해 CRIN의 아동권리협약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협약의 조항들을 총 12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1) 아동의 정의(1조)

아동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그 밖의 각종 하위

법령에서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현재 각 개별법령상 연령 기준은 입법자에 의해 자의적·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적지 않다. 아동 관련 법령을 제·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탐구·분석하여 각 영역별로 기준연령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범죄 능력, 혼인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치료행위 또는 낙태에 대한 동의능력, 고용·군사 등과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이행 권고해왔던 쟁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 제공, 사회보장급여 수급, 학자금대출 등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령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일반원칙(2조, 3조, 6조(1), 7조, 8조)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그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를 기초로 해서만 아동은 성명, 부모 기타 가족관계, 보호자, 국적 등 그의 정체성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status)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분을 바탕으로 비로소 당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담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를 심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미혼모나 불법체류 외국인과 같이 출생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모로부터 출산한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출생미신고아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의 보호시스템으로부터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실종 아동과 같은 무연고아동에 대한 등록시스템이 비교적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정작 부모가 있는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 중 쌍방이나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외로 이송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국제아동 탈취협약의 이행 미비, 헤이그 국제입양 협약 및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미가입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3) 협약의 이행(4조, 42조, 44조)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협약과 국가보고서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협약상 아동의 권리가 갖는 함의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호수준,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권리보장수준에 관한 대중과 미디어, 시민사회의 이해는 심각할 정도로 낮다. 온라인 위주의 소극적인 광고 방식의 홍보로부터 학교교육과정 및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활용한 적극적 교육 방식의 홍보로 전환하고, 특히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과 같은 특수계층을 위한 홍보 수단을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수준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협약 중 유보조항이 남아 있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제협약도 존재한다. 협약의 이행상황을 총괄적·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아동영향평가 제도, 아동예산분석 제도 및 아동 모니터링 제도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예산의 확대,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의 구축, 포괄적 아동권리법의 제정과 같은 핵심 사업들 역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영향평가 제도 및 아동예산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분절·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아동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4) 시민적·정치적 권리(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아동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유형의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리침해행위는 주로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학교, 시설 등에서 부모·교사 등 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 등에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적극적으로 나열하여 금지하는 한편, 사안의 유형에 따라 일부 유형

에 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일부 유형에 관해서는 금지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막아 아동이 당해 사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아동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시도하기에 앞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5) 가족과 대안양육(5조, 9조, 10조, 18조, 19조, 20조, 21조)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히 여성취업률의 상승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조손가정과 같은 친족위탁 사례가 아동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무환경, 사회적 분위기, 지원체계와 예산 기타 제반 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법정책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 수준에서 국가가 부모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 내지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반드시 법원의 친권상실·정지·제한 재판을 거친 경우에만 친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후견인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와 보호자 간의 권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조치와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친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과 합의, 관련 법규의 정비 작업 등이 필요하다. 이미 제도적으로 도입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 문제에 관한 아동의 의견표명권 등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대안양육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에도 정말 대안양육이 개시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나 그 판단의 주체,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대안양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설령 대안양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라도 요보호아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동일 내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요보호아동에게 보편적으로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분절과 중복 문제 역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양육비용의 산출을 위한 기초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피학대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시스템도 문제이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한 결과 피학대아동의 발견 자체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학대아동이 발견된 경우라도 가정 내 체벌·학교 내 체벌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유형의 체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의 개시가 쉽지 않다. 설령 보호조치가 개시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에 대해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확대·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보호조치에는 이러한 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이 갑자기 출국을 강제당해 주거권이나 학습권 등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결혼이주여성이나 불법체류자에게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령 면접교섭)를 위해 필요하다면 체류자격이나 국적 등을 부여하는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다. 물론 이는 출입국통제에 관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 건강과 복지(6조(2), 24조, 33조)

아동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 및 생산·거래에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내 법적 조치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로 수사받는 아동의 상당수가 환각물질(이른바 ‘본드’) 흡입 사안에 해당하는바,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형 본드에 사용되는 환각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해결가능하다. 수많은 청소년을 소년범으로 만드는 대신 애초부터 환각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협약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건강에 해악을 미치는 음주 및 흡연을

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조문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 시행을 위한 경찰·검찰·법원의 강력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위반업체 적발 및 처벌이 미흡한 상황이니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음주와 흡연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7) 교육 및 문화적 권리(28조, 29조, 30조, 31조)

우리나라에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새터민 등의 증가로 인해 인종적·언어적 소수자 아동의 숫자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합법적 체류자에 한정된다는 범위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그들을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에 적응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가르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약의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소수자 아동이 자유롭게 출신 지역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와 언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사회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 아동을 위해 충분한 교육 및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아동이나 체류허가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부모로부터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8) 사법체계(40조)

소년사법 제도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소년사법제도를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응보와 일반예방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래는 범죄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아동의 행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널리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우범소년’, ‘촉법소년’ 개념도 문제이다.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통합하는 대대적인 소년법 개혁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회복과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따른 각종의 보호조치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금조치의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 아동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에 그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적절한 환경 및 시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법·제도 개혁과 아울러 아동구금시설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접근이 함께 행해질 수 있도록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하바나 규칙)에 근거한 모니터링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9) 폭력(36조, 37조)

아동을 모든 종류의 사회적 착취와 비인간적·굴욕적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조치가 실제 해당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비행청소년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송치하는 경우 그러한 시설 내에서 오히려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인에 의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도한 영재교육에의 집착, 아이돌 문화로 인한 아동의 연예계 활동 선호, 미디어에서의 과도노출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어린 나이부터 그 재능과 인격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객체로 간주하는 결과 정작 아동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아동 관련 연구 과정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에 대한 착취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아동들 자신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0) 경제적 권리(26조, 27조, 32조)

아동의 근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이 주된 근무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

이 협약의 이행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지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그나마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의 조정 및 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특례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 취약환경의 아동(22조, 23조, 25조, 30조)

최근 난민법의 시행 등으로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신청 아동, 특히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무연고 난민 신청 아동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그들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난민신청 절차에 관하여 법률조력인, 통역 등을 제공받지 못한다.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협약상 보장되고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은 제대로 된 임시적 대체양육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채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출국시까지 대기해야 하며, 설령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협약이 보장하는 가족과의 재결합권을 실현시킬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모 미동반 난민 신청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을 준비할 시점이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대체적 양육 수단이나 치료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에서의 입소 조치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가정 외 보호서비스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치는 해당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보호조치 등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보호의 필요성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 심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본래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심사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그 구성 및 운영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유명무실한 조직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관련 심의기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2) 성적 착취와 학대(11조, 34조, 35조, 39조)

모든 아동이 성적 착취나 국제매매·약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왔다. 문제는 오로지 ‘실천’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제혼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출신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도 그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거나, 해당 국가들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도록 압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에 대한 치료·상담·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피해 아동이 재차 성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아직 아동 성매매에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도입 및 아동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차단, 정교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착취 외의 분야에서 아동의 약취·유인·해외이송 등에 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가령 아동 성관광, 연예활동 이주, 해외 입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각 피해아동 집단별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성적 착취가 갖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 고조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착취 간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절실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적 교육과 홍보, 의제강간에 관한 형법상 조문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간의 충돌 문제의 해결 등이 있어야만 협약의 이행 저해 요인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 두 번째 기회,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한 아동복지

본 작업은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별 의미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조명해 보고 각 조항의 내용이 국내 법과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아동의 삶에 미친 영향을 어떠한 지를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항별 분석 방식을 취하므로써 아동권리 각 조항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과 편파, 혹은 결핍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약의 각 조항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삶을 균형있게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협약의 어떠한 조항이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지, 협약 조항의 의미에 반하는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정교한 반영을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조항의 의미에 비추어 법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항별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법과 정책의 시급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안하기 어려웠고 각 조항에 중복 해당되는 법과 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Moss와 Petrie(2002)는 아동기가 생물학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를 이해하고 보내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이 다양성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이미지는 우리가 행동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이 누구인가에 대해 오로지 한 가지 답만 있었던 적은 없다. 여러 발달이론 및 지역사회, 그리고 직종에서 아동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만들어 내었으며 아동기에 대한 정의는 정치, 역사 및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협약은 아동이 자신들의 삶의 대변자이며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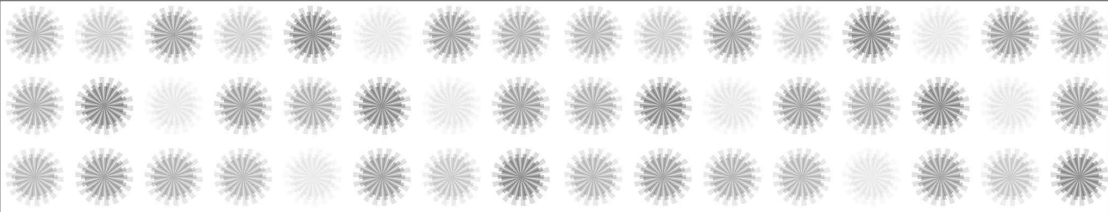
아동에게 권리의 주체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 국제사회는 아동 개인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발달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녕과 행복이 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며 아동이 처한 환경적 조건들이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된 시각을 발달시켰다.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아동권리는 아동복지의 기반이 된다. 최근의 아동복지

는 아동이 부모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성장과정에서 별다른 위협에 노출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나 가족을 둔 경우를 제외한 아동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하였다. 성인 주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동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인간 그 자체이며 그러기 때문에 성인들처럼 아동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보호와 성장환경을 제공받아야 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喜多明人, 森田明美, 廣澤 明, 荒牧重人(編)(2009). [逐條解說] 子どもの權利條約. 東京: 日本評論社
- 전종관(2014). 출생. I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편), *임상윤리학*, 제3판,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56-184
- Van den Sloot, E., Vermeiren, R.(2012). Forens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Rey, J. M. (ed), *IACAPAP e-textbook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Geneva: IACAPAP
- 이재연 외(2015). 아동복지실천현장과 아동권리레토릭, 교육과학사, 출간예정
- 정선영(2015). 학교밖 아동, 아동복지실천현장과 아동권리레토릭, 중, 교육과학사, 출간예정
- 황옥경(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인식연구, 아동과 권리. 15(3), 501-523
- 황옥경(2014).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 황필규(2015). 이주아동의 권리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국제아동 인권센터 포럼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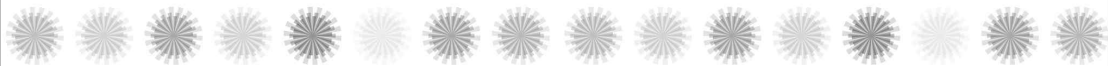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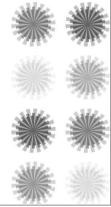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주제발표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정책과제 모색

▣ 김영지,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정책과제 모색¹⁾



Ⅰ 김영지,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한국정부는 1994년 제1차, 2000년 제2차,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7년 6월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노력을 담은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고서에는 이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우리사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 실행을 위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을 중간 점검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내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적 이행 방안의 구체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추진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중의 하나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을 선정하고 2017년까지 권고사항 이행 9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이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시과제인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의 연구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격을 가진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계량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많은 과업들 중 특정 과제를 ‘이행과제’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된 우선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고사항 이행과제 추진노력을 촉진시키고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소규모 단기로 진행되는 과제 특성 상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 수행을 연구범위로 하며,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수렴(51명)을 통해 이행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초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해 후속적으로 소관부처별 검토 및 투입가능 자원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한국정부 정기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권고사항은 협약 클러스터별로 총 88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권고사항 자체가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슈가 있고, 개선의 최종 목표수준과 타임스케줄에 있어서도 완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개선과제들 중 어떤 것을 핵심적인 이행과제로 선정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의 주요 방법으로 광범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행과제의 타당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행률 점검’이라는 이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이행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추진부처별 자원투입 수준에 따라 세부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어 정부의 이행과제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과제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107개²⁾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해당조항, 2011년도 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 소관부처가 제출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2014~2015년 NGO 의견 등을 자료로 제시한 후, 권고사항의 진전노력, 중요도(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준거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실현가능성 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수행기간은 단기(2016년까지 완료과제), 중기(2017년 5·6차 국가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완료과제), 장기(2017년 이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기타 중에 선택하게 하였다.³⁾

107개 권고사항 평균값을 보면, 진전노력 정도는 5점 만점에 2.70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사회의 이행노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권고사항의 중요도는 4.28점, 실현가능성은 3.38점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수행가능성은 단기, 중기, 장기 등 3개 문항 기준으로 2.11점을 나타내어 2017년까지 수행할 중기 과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행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선행연구와 분야별 정책 관련자료 등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검토하여 ‘권고사항 이행과제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과정을 거쳤다. 이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07개 권고사항별 정책과제

2) 본 연구의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는 2014년도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권고사항 모니터링 보고서(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문서의 88개 권고사항 항목을 주제 중심으로 10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권고사항 문단에 여러 정책주체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세부 정책주체별로 소관 부처나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누락없이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중복적이거나 여러 조항에 걸친 포괄적인 권고(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이나 다른 국제문서를 고려하라는 권고사항들)로서 하나의 과제로 도출하기 애매한 내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초기 작업 시 권고문서의 충실한 검토와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107개 권고사항 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3) 의견조사 과정에 참여한 총 51명의 전문가는 학계전문가 32명과 현장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핵심적인 우선과제 1~2개 내외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작업하였다. 최종 보완된 정책과제(안) 158개를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와 동일한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같이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해당조항, 2011년도 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 소관부처가 제출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2014~2015년 NGO 의견 등을 기본 참고자료로 제시하였고 158개 정책과제에 대한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정책과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자유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158개 과제에 대한 적절성은 최저 3.57점, 최고 4.71점, 평균 4.27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전문가협의회에서는 2차 의견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적절성 점수가 낮은 과제에 대한 삭제 및 통합 조정 등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2차 의견조사와 더불어 158개 과제(안)에 대해 본 연구의 2014년도 선행작업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작업과정에 참여한 35개 민간단체 의견수렴도 추가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 초안 작성 시 앞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제시된 민간단체 의견을 참고하였으나 당시 다양한 자문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과제로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다. 35개 민간단체 중 대부분은 선행작업 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므로 이의 적극적 반영을 강조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13개 단체는 제시된 정책과제(안)에 대한 수정사항 및 보충의견, 새로운 정책과제 추가 의견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와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 과제(안)’을 제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인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표 1〉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구성틀

영역	세부 영역	문단번호(para.)	본 연구의 권고사항 일련번호	
I.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1. 기존 권고사항	6~7	-	
	2. 유보	8~9	1~2	
	3. 입법	10~11	3~4	
	4. 조정	12~13	5~6	
	5. 국가행동계획	14~15	7	
	6. 독립 모니터링	16~17	8~9	
	7. 자원의 할당	18~19	10~16	
	8. 자료수집	20~21	17	
	9.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23	18~20	
	10. 국제협력	24~25	21~22	
	11. 아동권리와 재계	26~27	23~26	
II.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1. 비차별	28~29	27~29	
	2.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31	30	
	3.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32~33	31	
	4. 아동견해의 존중	34~35	32~36	
III.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조)	1. 출생신고	36~37	3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39	38~39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41	40	
	4. 차별	42~43	41~43	「IV. 폭력 및 학대」 영역 신설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46	44~49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1. 가정환경상실아동	47~48	50~53	
	2. 입양	49~50	54~59	
VI.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1. 장애아동	51~52	60~63	
	2.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54	64	
	3. 정신건강	55~56	65	
	4. 청소년 보건	57~59	66~68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61	69	

영역	세부 영역	문단번호(para.)	본 연구의 권고사항 일련번호
VII.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협약 28, 29, 31조)	1.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63	70~74
VIII.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 (b)-(d) 및 32-36조)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67	75~76
	2. 이주 상황의 아동	68~69	77~78
	3.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71	79~84
	4. 성적착취	72~73	85~90
	5. 인신매매	74~75	91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77	92~93
	7.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79	94~96
	8. 소년사법운영	80~81	97~102
	9.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83	103
IX. 기타분야	1.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104
	2.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105
	3. 후속조치 및 배포	86~87	106~107
	4. 차기 보고서	88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10.6.).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CRC/C/KOR/CO/3-4).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 번역본 참고.

* 권고사항 일련번호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2014)’의 기준을 활용하였고, 201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폭력 및 학대’를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하여 구성함.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2015. 3)).

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1. 일반이행조치

1) 유보 (권고사항 8~9항)

- (1) [권고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진전노력 정도(5점)	3.21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⁴⁾	1.78	실현가능성(5점)	3.92

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민법에서도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2012. 2. 10.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협약조항의 유보철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교부를 통해 유보조항 철회절차를 추진하도록 한다.

- (2) [권고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진전노력 정도(5점)	1.63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5	실현가능성(5점)	2.71

- ① 과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단심제 적용 범조항에 ‘18세 미만 아동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조항 추가 등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제4

4)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수행기간은 단기(2016년까지 완료과제), 중기(2017년 5·6차 국가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완료과제), 장기(2017년 이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등으로 선택지를 제시함.

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군사법원법’ 제534조(전시·사변 시의 특례규정)에 따르면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포로에 대한 죄 등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관련 협약조항 기준을 유보하였다.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상소권 제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재심받을 권리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위 관련 조항의 단심제 적용 예외로 하고 협약 유보조항 철회가 필요하다. 이의 현황과 문제점 및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의 개정 요건과 가능성 등 기본적인 검토 자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자 회의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입법 (권고사항 10~11항)

- (1) [권고3.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진전노력 정도(5점)	2.33	중요도(5점)	4.1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3	실현가능성(5점)	3.46

- ① 과제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검토 연구(협약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된 외국판례 연구 등) 및 국제인권규범의 재판 적용례 촉진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인용되는 현황은 미약하다(홍관표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1993년 12월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 2건으로 나타남).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들에게 조약 기구의 결정과 일반권고의 통합 및 적용이 의무화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헌법 조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우종길, 2011) 외국의 사례분석을 포함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사법판결에서의 협약 적용 활성화를 위해 법관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인석, 2011).

②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의 아동인권 교육과정 제도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관계자들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공익변호사단체 등에서 로스쿨 입학 예정자나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나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과 아동인권 관련 과목을 의무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권고4.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행가능성(5점)	3.63

① 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검토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이 있으며(제269~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의 경우 음성적 낙태로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 청소년의 경우 신속한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계는 낙태 합법화는 단순한 낙태 허용을 넘어 낙태에 대한 의료 심리적 지원을 가늠하게 하고 십대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 등과 같은 다층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보고 있으나(양현아, 2012: 91) 종교계 중심의 반대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제가 있다.

② 과제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임신 이유로 자퇴를 강요받은 여고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권고하고 관련 부처들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마련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8). 교육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과 2013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12; 교육부, 2013.10). 그러나 학교규칙은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학교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학이나 자퇴 권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휴가(주 5일 수업제의 경우 최대 63일)를 질병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해숙·최윤정·최자은, 2014: 276-278).

3) 조정 (권고사항 12~13항)

(1) [권고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2	실현가능성(5점)	3.75

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등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아동복지법 제 10조).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업무 한가지만으로도 방대한 업무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상근 전문연구원 채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 없어 아동권리와 협약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 과제인 상설 사무국 설치와 함께 단기적으로 아동복지법상 배치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채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항 :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권고6.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29

① 과제 1. 아동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소통 및 조정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하여 연령기준 상 많은 정책대상을 공유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분야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의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4) 국가행동계획 (권고사항 14~15항)

(1) [권고7.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 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8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4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협약에 기반한 이행점검 강화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이행 촉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 과정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 2015: 18-19), 이행성과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과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국가행동계획과 관련이 깊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과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2~’16) 이행 과정에서도 아동 인권 관점의 실행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독립모니터링 (권고사항 16~17항)

(1) [권고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0	실현가능성(5점)	3.88

①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조직 및 인원 확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14년도로 사업종료되었으며,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되어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권팀은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모니터링, 권고와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재 팀 단위 5인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인권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권고9.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0	실현가능성(5점)	3.83

①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 침해사건 심의·의결을 위해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1항 : 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

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②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 마련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포함 가능)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을 확정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개정 추진을 권고한 상황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 2015.1) 이의 조속한 실행 촉구가 필요하다.

6) 자원할당 (권고사항 18~19항)

(1) [권고10.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4.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현가능성(5점)	2.92

① 과제 1. 아동예산의 정의와 산출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매년 변화추이를 점검·평가하고 이슈화

아동정책 분야 총예산(‘14년 국비 기준)은 49조 1,377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며, 교육과 보육을 제외한 아동예산은 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로 OECD 및 국내

노인(2.1%), 장애인(0.6%)에 비해 낮다(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 2015: 102). 이는 아동정책 재정 범위를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 범주 중 아동가족분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아동예산 규모는 이를 산출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상황으로 아동예산 변화추이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아동예산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산출기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정책부서 이원화로 인해 청소년정책 분야의 18세 미만 예산 누락이 없도록 고려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예산을 최대한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에서 아동연령 분리통계를 산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매년 아동·청소년 예산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등 이슈화가 필요하다.

- (2) [권고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7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2.67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의 지역별 현황 및 재정자립도와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 실시

아동·청소년 예산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예산 현황과 재정상황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과 복지욕구 등을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실태 파악 후 지역별 격차가 큰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검토

2005년 지방분권화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이양된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의 책무성이 강한 생계불능의 취약계층지원예산이 대부분이었고 지방비 부담 증가, 도·농간 인프라 격차 및 지방간

재정력 격차 등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환경의 어려움과 맞물려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고려 관점의 정책실현 노력이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129-132;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50). 20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가지 사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바 있어 지방비 부담이 큰 그 외 사업들의 환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아동복지시설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필요 의견 제시)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사회보장위원회 2015.8.11) 관련 논의

(3) [권고12.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촉구]

진전노력 정도(5점)	1.96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2	실현가능성(5점)	2.79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 도입 연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입된 자원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영향평가제도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를 도입을 위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2006년 국가재정법에 조항 마련)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예산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5.8) 이러한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친화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중장기계획의 관련 사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 추진과제 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지 도입,
2-1-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추진과제 5-5-2. 아동영향평가 도입

※ 여성분야 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15.1: 3)

○ 성인지예·결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6)

②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인지예산 생산 시 18세 미만 아동 예산 생산 의무화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작업 시 18세 미만 아동 연령 예산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권고13.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 수립을 도입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67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8	실현가능성(5점)	2.58

①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 재원배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평가 실시

아동권리관점에서 재원배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평가하고 아동친화적 예산 확대를 촉진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제도화가 가능한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과제 2.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 성과를 수치화한 자료 개발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등)와 국민 관심 촉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의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지만 국가예산수립 관련 주체들과 국민적 관심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작업을 통해 설득과 촉구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분야 연구 중 청소년 체험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거나 청소년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하는 등의 사례 참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국가재정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등 국가예산의 주요 결정주체와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5) [권고14.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71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8	실현가능성(5점)	2.50

①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및 효과적 모델 개발)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업개발과 예산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예산 배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6) [권고15.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1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행가능성(5점)	3.3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입법부 및 행정부 예산결산 과정 감시활동 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결정, 부처별 예산 요구서 작성·제출,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예산안이 수립되는 단계별로 입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 과정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고려 원칙이 반영되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특히, 예산안 편성 전에 실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개발 및 이슈화 작업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이 언급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할당과 예산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7) [권고16.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8	실현가능성(5점)	2.46

①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 권리관점 반영 촉구(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아동·청소년친화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 등 공론의 장 마련)

위 권고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9항 '자원의 할당' 분야의 모든 이행과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포괄적 검토사항이라 할 수 있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입안자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국회 차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아동예산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동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만큼 국내적으로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Towards better investment in the rights of the child"(2014.12.19. A/HRC/28/33)).

7) 자료수집 (권고사항 20~21항)

(1) [권고17.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 -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8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7	실현가능성(5점)	3.25

① 과제 1. 주요 국가통계자료에서 아동(18세 미만) 및 청소년(9~24세) 연령기준별 통계 자료 생산 제도화 : 법조항 반영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과 관련한 연령기준별 통계가 부족하여 객관적 실태파악이 어려운 사항이 많다. 여성분야의 성인지통계와 같이 주요 연령기준별 통계 생산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지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제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조사의 체계화를 통해 중복과 누락 방지(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있던 시기에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한차례 실시되었고, 아동부처와 청소년부처가 이원화된 이후에는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다(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년, 2014년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 실시). 두 개의 조사는 겹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가구조사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통합 조사시스템 구축 가능성 및 조사내용의 상호검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8) 보급, 인식 제고, 교육 연수 (권고사항 22~23항)

(1) [권고18.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4	실현가능성(5점)	3.75

① 과제 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의 인권교육 시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인권역량 강화

학교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교사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시,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현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 관련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권관련 교과와 개설과 함

계 교원임용시험의 평가항목에 인권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전문연구 등에 인권교육 시간을 포함시키고 특히 원감, 교감, 교장 자격연수의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생 인권보장의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학교장의 인권역량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김철홍, 2013).

② 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관련법은 2007년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4년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재원 확보,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원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권고19.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8	중요도(5점)	4.6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체계화(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관련 법조항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명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인권교육 실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과정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종사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권고20.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7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7	실현가능성(5점)	3.67

①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2014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등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협약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부모,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성인 등 전 국민적 협약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언론과 대중매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협약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9) 국제 협력 (권고사항 24~25항)

(1) [권고21.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0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ODA사업의 아동인권 관점 시행(사업효과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평가 실시)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 확정하여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2030년까지 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인 0.30% 달성을 전제로 목표 도출)(2015.11.10.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4년 잠정 ODA/GNI 비율 : 우리나라 0.13%,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29%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ODA 사업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ODA 사업이 아동인권 관점에서 시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게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보도자료, 2015).

(2) [권고22.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9	중요도(5점)	3.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2	실현가능성(5점)	3.04

① 과제 1.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와 영향 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아동 인권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ODA 수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아동권리 관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조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아동권리와 재계 (권고사항 26~27항)

- (1) [권고23.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제를 마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96	중요도(5점)	4.1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공개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에 인권경영 책임이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아동노동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주의의무 이행 여부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은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당주의의무 :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이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추적하고, 아동노동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관해 소통을 할 책임을 말함. 구체적으로 1)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겠다고 하는 최고 경영진의 정책 약속이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고, 2) 그러한 정책 약속이 기업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3)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4) 그 평가를 종합하여 아동노동을 중지하고, 예방하고,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취하며, 5) 기업이 아동노동을 야기하거나 아동노동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6) 이러한 행동과 구제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추적하고, 7) 장기적이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강제 노동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소통을 하는 것(김종철, 2014)

- (2) [권고24.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4.1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2.92

① 과제 1. '아동노동 착취없는(아동친화기업) 제품'인증 및 활용 촉진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노동 착취없는 제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기업 제품활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나 착취가 없는 공정무역 상품 등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아동친화제품에 대해 인증명칭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을 촉진한다.

② 과제 2.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검토

아동인권 침해 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세법 등 관련 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3) [권고25.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0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1	실현가능성(5점)	3.17

① 과제 1. 기업대상 아동권리 감수성 프로그램 실시 및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2013년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을 시상한 사례가 있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 경영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상장기업에 보급하고 대기업 대상의 인권경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 2015.11.11). 기업대상의 인권경영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발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 ① 인권경영 체제구축, ② 고

용상 비차별,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④ 강제노동 금지, ⑤ 아동노동 금지, ⑥ 산업 안전, ⑦ 공급망 관리, ⑧ 현지주민 인권, ⑨ 환경권, ⑩ 소비자인권

(4) [권고26.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3.8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64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자유무역협정 관련 아동 인권영향평가 방안 개발 및 제도화 연구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 인권 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2. 일반원칙

11) 비차별 (권고사항 28~29항)

(1) [권고27.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33

① 과제 1. 인종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인식 확대

2006년경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로 성적 지향과 관련된 국민적 인식부족으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안내와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고, 2013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01번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제의 두번째 추진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의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권고28.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이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58

① 과제 1.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예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공개로 인한 차별로부터 아동보호)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득수준, 가족형태 및 유형, 보호자의 직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차별 발생 우려가 있다. 학교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정보나 수학여행비가 무료인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3) 학교나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노력과 인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인권 민감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보급을 통해 서비스 담당자 대상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3) [권고29.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5	실현가능성(5점)	3.92

① 과제 1. 임신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청소년의 경우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김지연, 황여정 외, 2013).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미혼모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임신단

계의 초기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혼모 관련 제도, 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가능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김지연, 황여정 외, 2013: 309).

② 과제 2. 청소년한부모가 입양이나 아동 유기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현실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으로, 이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또는 15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양아동 양육비가 15만원이라는 점을 볼 때, 친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면 친권 포기자나 아동 시설 입소 아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5).

12) 생명, 생존 및 발달 (권고사항 30~31항)

(1) [권고30.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8	중요도(5점)	4.7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1	실현가능성(5점)	3.83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예산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통합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경쟁적 사회구조와 회복적 사회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적·병리적 접근의 심리상담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긍정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아동이익 최우선 (권고사항 32~33항)

- (1) [권고3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모든 사법·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58

- ① 과제 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 내용 연구)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정책화한 것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이들의 이익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313). 앞의 권고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중 장기계획에서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4년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기초연구 수행 이후 구체적 제도화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4) 아동견해 존중 (권고사항 34~35항)

- (1) [권고32.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3	중요도(5점)	4.8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54

- ① 과제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 확대 :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도록 함. 절차보조인 제도 등)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민법 등은 13세 이상 아동 입양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권고56번 참조), 아동복지법 제15조, 18조, 19조는 각종 아동보호 조치

와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등의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의 의견청취 연령기준은 없음). 대부분 아동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13세 이상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며 회원국이 법과 관행으로 나이제한을 도입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기 초기부터도 아동의 놀이, 몸짓, 표정, 낙서나 그림 등 비언어 형태의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UNCRC, 2009: para. 21). 대법원이 2015년 2월에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원은 모든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현행은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만 의무)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객관적인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개정안 제16조, 제20조).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들의 근거조항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권고33.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6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1	실현가능성(5점)	3.75

① 과제 1. 학교 및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장애가 되는 법규정 및 기존 참여보장 법규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예 : 초·중·고등학교 상 학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참여, 징계 재심청구권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실태조사)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초·중·고교육법 제18조),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18조의 2), 학칙 제·개정 시 학교의 장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4항).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61.5%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학생참여 현황과

과 참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참여권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의 학생참여 대상학교에 사립학교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학생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 (3) [권고34.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7	중요도(5점)	4.3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을 인권과 참여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통해 회원국이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 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 협약 제12조(참여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참여를 실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UNCRC, 2009: para. 49).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통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권과 시민권의 주체로서 동등한 사회발전의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참여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는 참여의 의

의와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별로(교육, 행정, 사법 등) 아동·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파트너십 형성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권고35.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4.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5	실행가능성(5점)	3.42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아동에게 사안의 결과와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참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가능하다면 아동·청소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UNCRC, 2009: para. 45, 134). 단위학교 학급회 및 학생회, 지역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총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과정에서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각 참여프로그램의 활동 결과, 참여 수준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참여가 명목적·형식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참여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5) [권고36.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4	실행가능성(5점)	3.54

① 과제 1. 일반논평 제12호의 참여권 이행방안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자료로 개발·보급

일반논평 제12호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참여권)의 의미와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라 할 수 있다. 법적·철학적 논의부터 다양한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실행요건 등이 제시되어 있다(가족, 대리보호, 보건의료, 교육 및 학교, 놀이·레크리에이션·스포츠·문화활동, 직장, 폭력상황에서, 예방전략의 개발에서, 이민과 보호 요청과정에서, 비상 상황에서, 국가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 등에서의 참여권). 일반논평 제12호의 내용을 정부 및 행정기관, 아동·청소년 단체에 보급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버전의 자료의 개발·보급, 참여권의 의미와 실행방법에 대한 워크숍 개최,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연수과정에 반영 등이 필요하다(UNCRC, 2009: para. 7). 참여권은 장유유서의 유교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한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우수 참여 실천사례나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역량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 제고를 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시민권과 자유

15) 출생신고 (권고사항 36~37항)

- (1) [권고37.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4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7	실현가능성(5점)	3.29

① 과제 1. 출생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등록제 형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적 시스템(의료보험 등) 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미등록 아동은 손쉽게 불법인신매매, 불법입양, 유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출생 후 3일 이내에 모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전송함으로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미혼모 등 출생등록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136-137;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2014: 72-77).

② 과제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 실시 검토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부모의 자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등은 출생등록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으로,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보육서비스, 건강보험, 인터넷 등록 등 각종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을 국적부여와 별도로 실시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거나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김경준, 이호균 외, 2014: 74-79;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103-104).

16) 사상 양심, 종교 자유 (권고사항 38~39항)

(1) [권고38.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5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25

① 과제 1. 학교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대체과목 마련을 통해 종교교육 선택권을 보장 등) 및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 주기적 점검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59.4%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지 않아도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김경준, 김희진 외, 200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이의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

하도록 한다.

- (2) [권고39. 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3.8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5	실현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종교적 신념(이슬람교 등)이나 식습관(채식주의)에 따른 학교급식 메뉴의 배려 (다양성 고려 및 강제 급식지도 지양)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급식 지도가 필요하다.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무적 급식 지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 조치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식습관을 고려한 대체 급식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죽전초등학교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내일신문 대구경북, 2015. 9. 24)

17) 평화 결사, 집회 자유 (권고사항 40~41항)

- (1) [권고40.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3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08

①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학급 및 학교운영에의 반영도 제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 등은 모두 ‘의사 표현의 자유’ 조항과 ‘자치’ 및 ‘참여’ 관련 조항을 통해 자발적 결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학교 규칙 수준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수준의 조항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 현황파악은 어렵다. 학칙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학생

의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담아낼 것인지 구성원간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참여활동으로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학생회·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 확보(월 2회 이상 권장)’, ‘학생자치 모델학교 운영·지원(초·중·고 100교, 교당 200만원 지원)’,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학교 대토론회 정착’, ‘우리학교 선거법 제정’,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안전개진 허용’을 추진한다.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역별 학생자치 협력학교 네트워크 및 학생자치 담당교사 연구동아리 조직·운영’,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관리자 워크숍’,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 등을 운영한다. 학교·지역사회의 학생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사회참여 발표대회’, ‘학생참여예산제 단계적 정착’ 등을 추진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5. 2. 5).

4. 폭력 및 학대

1) 체벌 (권고사항 42-43항)

(1) [권고4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4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9	실현가능성(5점)	3.36

① 과제 1.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학교규칙의 체벌 관련 규정 실태 조사

동법시행령 31조 8항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만 금지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간접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체벌의 범위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모든 일선학교의 개별적 현황을 알기 어려우며, 신체체벌 중심의 현재 법규 자체도 준수되고

않아 교실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실태과악 및 모니터링과 범조항 개정조치가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의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르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도록 하고, 간접적 체벌은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또 그 수렴결과 수준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합당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② 과제 2.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및 관련법의 홍보와 교육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제3조 3항) 이 조항이 가정을 비롯하여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및 청소년시설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금지는 천명되었으나 기합이나 폭력 등 체벌 문제가 발생해 온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교정·보호시설 관련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부재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 또한 2015년 3월 개정되어 2015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이미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어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이 법령들의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신설 조항 마련이 요구되며 마련된 법 조항들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 방안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권고42. 차별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5	실현가능성(5점)	3.86

① 과제 1. 현행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매월 1회 송출 확대 및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차별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훈육 효과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부모교육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 맞춤형 교육 실시, cyber contents 개발 및 사이버교육 운영 등의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범국민적 차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의 제작 송출과 같은 공익광고를 매월 1회 지속적으로 공중파 방송에 송출하여 전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차별로 인한 아동 성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나 긍정적 훈육 사례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국민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홍보대사들을 위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한다. NGO는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NGO 및 학부모단체, 학교 등 유관기관의 연대를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운동의 전개를 제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차별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 (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

보건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혼인신고단계나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및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들을 지정해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3) [권고43.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대안적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긍정적 사례 발굴·보급(학생자치법정, 회복적 프로그램 효과 검증 등)

NGO의 2014년도 의견에 따르면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상벌점 배점기준의 모호성과 점수로의 계량화를 통하여 학생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진정한 교육적 자세가 아닌 것으로 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는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나 회복적 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측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별점에 대하여 대안적인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별점을 감해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여 자율적, 자치적 행위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에 따른 자율적 조치가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집(5권)에 따르면 그린마일리지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이 자의적으로 상·벌점을 매길 우려가 있고, 별점이 상한제에 오르게 되는 학생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겨 낙인효과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② 과제 2. 시·도교육청의 학교체벌 신고 및 중재 체제 도입 및 사전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2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의 내용에 관하여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을 어겨 학교체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신고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되,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 및 관련기관에 신고되기 전에 가해교사 피해학생, 학부모, 교장과의 화해와 조정의 교육적 중재 과정 체제를 도입하여 내실이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자격

취득 준비 과정이나 교원자격취득자의 신입교원 교육 및 연수 시 학교체벌 관련 법규와 취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징계 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학대·방임·폭력 (권고사항 44-46항)

(1) [권고44.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57	중요도(5점)	4.6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89

① 과제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화와 위반 시 대책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접수 및 신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임이 드러나 실제 위해가 가해지거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러한 피해발생 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징역이나 벌금 등 신고자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과정에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제 2. 전국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과 연수 실시

정부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 교육 내용과 시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과 내용이 관련 법이나 지침에 제시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권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동인권 NGO 및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수사기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가 아직까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권고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6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행가능성(5점)	3.79

①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 인구비례에 따른 확대 설치 및 전문가 배치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54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급증하는 신고율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적으로 추가 확대·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관련 기관 및 시설들이 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② 과제 2.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

학대피해자를 위한 일차적인 지원으로써 먼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주시설과 이들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이 총 국비 252억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593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국비의 대부분이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책정되어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증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등은 바람직한 개선이나 특히 현재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확대 재원은 범죄피해자기금과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일보,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http://www.hankookilbo.com/v/618f7e758048436ea53c0c837e64cc26>, 2015년 7월 20일 검색

(3) [권고46.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3.18

① 과제 1. 아동학대 및 폭력, 성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당 권고사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폭력 예방과 사후조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의견조사 및 아동·청소년인권관련 NGO의 의견 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이 학대 및 폭력, 성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성범죄 양상,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범죄가 아동과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 관련법과 처벌내용,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적 인식제고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4) [권고47.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7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유엔 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 권고사항 기준으로 정부의 폭력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방향 개선 실시

2011년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동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전문가의 아동권리에 대한 정기적 교육, 관련 국공립 및 사

립 기관들의 보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최근의 아동보육기관들에서의 아동 학대 및 폭력 사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사후에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자격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철저한 정부의 아동 관련기관들에 대한 폭력대책 및 평가체제를 점검하여, 확고하고 엄격한 아동보호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관련기관별 평가체제가 도입되도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폭력보고서(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6)는 "아동에게 가하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국제적인 보고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미리 방지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예방대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 유엔아동폭력보고서 12가지 권고사항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와 조치 강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금지, 예방 최우선, 비폭력가치 및 인식 촉진,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아동의 참여 보장, 접근이 쉽고 아동 친화적인 신고체계 및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면책금지, 아동폭력에 대한 양성적 관점, 체계적인 국내 데이터 수집, 연구 개발 및 시행, 국제적 책무 강화(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세이브더칠드런 번역, 2011)

(5) [권고48. 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개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8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분야의 광범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지난 수년 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폭력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 등의 폭력요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의 법제도 개선 및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먼저 심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완화시키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친교 프로그램, 즐겁고 재미있는 비폭력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교육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처벌 위주의 법적 대처보다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사례를 보급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하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 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아동복지법 제11조) 있으며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결과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된 사각지대에 나타나는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3)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1.9%가 가정, 아동학대 가해자의 83.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주원인으로는 양육기술 미숙(32.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2.4%), 부부 및 가족 갈등(9.4%), 성격 및 기질 문제(7.1%)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응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6) [권고49.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6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들과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구축

정부차원에서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들과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권고 및 보고서를 요약 번역하여 국내의 관련 기관들에 보급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적 인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부단한 홍보와 교육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4년 복지부는 1993년 발효된 헤이그국제아동양협약 비준 준비 지원을 위해 전담팀 인력을 확보하고,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입양을 위한 국제적 서비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이에 참여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외교부 인권사회과와 협력하여 관련 인력수급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Korean NPO for UNCRC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2012년에 유엔아동기금 아동보호분야 협력 강화 및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폭력 사무총장특별대표와의 대화 참여 지속,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 3위원회 아동 괴롭힘 및 폭력 방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UNICEF와 아동보호 분야에 관한 협력 강화 및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아동폭력 관련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에 관하여 외교부 인권사회과는 아동인권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와 함께 국제적인 기구들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권고사항 47-48항)

- (1) [권고50.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4	실현가능성(5점)	3.68

① 과제 1.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의무교육 실시

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양육기관의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대 및 방임피해와 같은 인권침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종사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기반한 실천(right based approach)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권리기반 실천에 대한 의무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권리기반실천을 통해 아동들 역시 대안양육기관에서의 생활 및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권리주체자(right holders)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며, 성인기 이후 삶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권리주체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대안양육기관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써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양육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된다.

- (2) [권고51.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8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7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학대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확대와 상담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강화

가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피해 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의료 및 상담과 같은 다각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학대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쉼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문치료사 배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회복지원 공간과 서비스가 전국에 설치되어 지역별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과제 2. 시설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별도의 인원, 기구·조직 마련

대안돌봄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과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를 위한 전담기구나 인력이 지정·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별도 전담조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지정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및 사후조사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발생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학대발생 사후처리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더불어, 아동의 의견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권고52.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4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현가능성(5점)	3.39

① 과제 1. 원가족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 강화

비록 아동이 불가피하게 대안돌봄시설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환경으로써 원가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경

제적인 이유로 대안양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시적인 시설보호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원가족으로의 복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원가족 복귀는 강화된 가족 기능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족 기능에 대한 엄밀한 사정(assessment)과 긍정적인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종사자의 상담과 지도 등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아동복지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아동복지법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 2. 원가족 찾기 및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확대

실제 원가족으로의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의 원가족 및 친부모에 대한 개입과 아동과의 교류프로그램은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심지어 아동들은 부모와의 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Chapman, Wall, & Barth, 2004),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를 기반으로 시설에서의 생활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원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지지에 기초한 부모의 정기적인 방문은 가족 간 유대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가족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행동과 방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Pecora et al., 2009).

- (4) [권고53.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4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25

① 과제 1. 대안양육 지속 및 원가정 복귀 결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가정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구 마련

대안양육의 한 유형인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의 가정위탁 배치, 친가정과의 연락 및 가정 복귀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또 가출청소년 및 학대피해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기구가 부재하다. 아동의 대안양육 필요성과 원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이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복귀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조직의 설치가 관련법과 예산부재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기구·조직을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2) 입양(권고사항 49~50항)

(1) [권고54. 중앙입양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0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54

① 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정비

201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은 입양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해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이외 해외 입양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 및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외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후 적응 뿐 아니라 파양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관계기관과 정부의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입양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입양가정에서의 적응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와 관련한 해외입양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법령과 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권고55. 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6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행가능성(5점)	3.89

① 과제 1. 해외 입양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 능통 직원 채용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후서비스로써 해외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6조의 중앙입양원의 기능으로써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과 입양가정, 그리고 입양관계 기관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상담지원, 그리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 영어, 불어 등의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수 언어에 한해서 해당 언어 구사가 능숙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입양특례법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권고56.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6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현가능성(5점)	3.89

① 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제도 강화

정부에서는 입양특례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양아동의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입양절차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양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사법기관 및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또 향후 장애아동, 다문화 및 이주가정 아동, 난민아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아동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12조(입양의 동의) :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및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안 마련

현재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에는 1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만 입양과정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입양이 이보다 훨씬 어린 영·유아나 아동에 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심문 및 조사과정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배석 및 조력을 통해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2015.2.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견청취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추이 파악 필요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4) [권고57.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46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현가능성(5점)	3.75

① 과제 1. 미혼모의 입양 또는 직접 양육 의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관련 정보(양육 지원 정보 등) 제공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입양숙려제 실시로 미혼모는 아동출생일부터 1주일 동안 입양과 직접 양육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나, 1주일이라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 조항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직접 양육 또는 입양의사에 대해서, 또 친생 부모의 아동 직접 양육 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충분한 상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양육 돌봄, 본인 학업 지속,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미혼모의 직접 양육 또는 입양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숙려기간동안 산모 및 영아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해서도 직접 양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를 요건 등)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를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

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과제 2.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과거 미혼모 출산 시 입양을 당연히 했던 사회분위기에서 이제는 미혼모의 직접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책변화는 친부모와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최우선환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사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미혼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미혼모의 자녀 양육, 학업 지속 및 취업, 돌봄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권고58.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86	중요도(5점)	4.3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2	실행가능성(5점)	4.14

① 과제 1. 아동 입양 시 사법기관(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와 민법상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도록 함에 따라 입양절차에서의 사법기관의 감독과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법에서의 입양 역시 개정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과 민법이 다른 시기에 다른 주무부처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충돌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현소혜, 2013). 민법상 입양에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양친이 될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신청의 경우 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별도의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현소혜, 2013). 이러한 입양이

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권고59.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7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43	실현가능성(5점)	4.36

① 과제 1.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 정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입양을 통한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⁶⁾ 정부는 2013년 5월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현

재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1993년 5월 29일 채택하여 1995년 5월 1일 발표되었으며, 현재 협약당사국은 90개국이다. 전문과 총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며 수령국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출신국에 송부하면,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입양동의 확보 및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입양 담당기관은 중앙당국이 담당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당국의 업무를 공적기관이나 인가단체(비영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입양국의 입양결정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효력을 인정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5. 27).

6. 장애, 기초보장 및 복지

1) 장애아동(권고사항 51-52항)

- (1) [권고60.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3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3.29

① 과제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와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보육사업기획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가 소관부처이나 현재까지는 모든 장애아동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현실화되는 것

6) 중앙입양원. 헤이그 협약의 의미. http://kadoption.or.kr/adoption/adoption_hague_mean.jsp. 2015년 7월 20일 검색

이 필요하다. 이때 특수교육기관의 직접적인 설립과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 급 학교에 특수교사의 배치 인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하는 것도 논의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애 유형을 분석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쉬운 경증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 유형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배포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특수교육 및 보육 기관 및 종사자 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각 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및 아동의 장애 유형별 지원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특수교사 외에도 모든 교사(통합학급 교사 중심)와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의 교육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아동 전담 교육 및 보육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2) [권고61.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3.39

① 과제 1. 특수교사 증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확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교사 증원노력을 하고 있으나⁷⁾ 향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특수교사 임용 및 배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전문

7) 교육부 보도자료(2013). 2013년 상반기 특수교사 465명 추가 임용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개선.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q=42250&mode=view>. 2015년 7월 30일 검색

성 강화를 위해 특수교원 연수 시 직무연수 시수와 내용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 2.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특수교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 처우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특수교사의 유형과 업무내용, 장애아동 1인당 특수 교사의 수, 특수교사 양성 방법 및 특수교사의 처우에 대한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특수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

(3) [권고62.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4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43

① 과제 1.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 증액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이 2012년부터 만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전면 실시되고 있다⁸⁾.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특히 장애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공을 위해, 관련예산을 포함

8) 교육부 보도자료(2012). 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q=30277&mode=view>
2015년 7월 30일 검색

한 특수교육 예산이 더욱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장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재원에 대해 관련 법/시행규칙 명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지원법 등에서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충분치 않은 예산 지원으로 지자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⁹⁾ 향후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법과 지침 등에 재원과 예산에 대한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권고63.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3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36

① 과제 1. 장애아동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통합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교급별 우수사례를 개발·확산시키고, 이를 기초로 한 교수·학습자료와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교육기관 설치·운영과 통합교육 방식 및 내용에 있어 부모와 아동의 관점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장애아동 인구

9) 관련기사: 장애아동 정부 예산부족으로 지원 뜯겨...부모 불만 증폭.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627&cID=10808&pID=10800. 2015년 7월 30일 검색

규모를 고려하여 확대·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및 교육과 발달지원서비스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개별 장애아동이 이후 제도권 통합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 및 보건 서비스(권고사항 53-54항)

- (1) [권고64.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3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36

- ① 과제 1. 이주·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무상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 및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조기 무상 건강검진부터 응급치료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3) 정신건강 (권고사항 55-56항)

- (1) [권고65.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6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행가능성(5점)	3.36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쉽게 외현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검사 및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상담 및 치료와의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낙인의 우려 없이 관련 진단 및 검진과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료와 개인정보 취급에도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지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학교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의 낙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 및 다문화 가정과 장애 등 특수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들 중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조사 및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evidence-based)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위험군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생활시설(장애아동 포함),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검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시설의 아동·청소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서비스와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청소년보건 (권고사항 57-59항)

- (1) [권고66.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2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행가능성(5점)	3.64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 예방 교육 확대 실시

현재 보건교육을 통해 학교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흡연, 흡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학급 및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약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흡연과 음주의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의 의존 및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이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광고 및 캠페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교육은 보건 및 상담교사와 같은 전담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외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권고67.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9	중요도(5점)	3.8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행가능성(5점)	3.57

① 과제 1. 유해식품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과 사후처리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더욱 확대·실시하고, 더불어 이러한 식품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처리를 더욱 내실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및 고열량

함유 음료 및 음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대한 판매와 방송광고 (PPL등의 간접광고 포함)를 더욱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스쿨존이나 그린푸드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 및 적발 사례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¹⁰⁾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도·계도수준의 사후처리를 좀 더 실효성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권고68.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행가능성(5점)	3.50

① 과제 1. 인권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및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성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들이 성과 생명 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해외사례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수준과 너무 괴리되거나 지나치게 가치편향적이지 않도록 다양한 관계자의 검토와 개입이 요청된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수준과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단계와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되, 아동·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10) 정책뉴스(2015.0 05. 08).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 2015년 7월 29일 검색. 기사내용 요약 :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 적발

5) 사회보장생활수준 (권고사항 60-61항)

(1) [권고69.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3.11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복지재원 배정 및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법률 명시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중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할 때, 한국의 GDP대비 해당지출은 0.8%수준으로 평균인 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정부에서는 2014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아동빈곤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이 기본계획에 빈곤아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빈곤,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사업 실시에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관계부처 합동, 2015, p.99)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배정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관련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을 말한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 직업훈련 생활지도 포함, 교육 (권고사항 62-63항)

- (1) [권고70.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4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76	실현가능성(5점)	2.83

- ① 과제 1.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 : 초중등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교육 3주체 및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 논의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먼저 현행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하기 전에 실제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현행 교육 및 시험 제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범 학계 및 각계의 현행 교육 및 시험 제도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대안에 관한 과학적 논의 체계를 마련하여 무엇보다 현행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교 서열화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입법한다.

이러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되 아동의 인권차원에서 정부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아동 인권관련 민간단체, 학벌사회 및 청년실업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교육병폐를 혁신하도록 한다.

- (2) [권고71.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4.7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71	실현가능성(5점)	2.75

① 과제 1. 고교평준화를 위한 서열화 관련 모든 제도 점진적 철폐

현행 대한민국 학벌사회로부터의 모든 교육적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한 대학의 서열화에 있어 초중등교육과정부터 극심한 서열화 경쟁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과는 궁극적으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을 모델로 대학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의 원인을 타파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서열 상위대학들과 이 학교 출신의 기득권자들의 극심한 저항과 방해로 국론의 분열이 우려되고 대학교평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교 평준화제도의 도입 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교평준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아동인권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신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권과 이들의 여가 및 문화 향수권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교의 서열화제도는 학벌사회는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계층의 선순환 이동을 저해하고, 사회 계층 간 양극화 갈등을 심화하고 극렬하게 조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유린하는 악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개선되고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하여 비록 교육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아동인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가 주체적으로 주도하여 교육부와 관련 시민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등교육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특목고를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으로만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강력하게 폐지시키며, 이와 함께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NGO가 제안한 것처럼 최근 진로교육법(2015. 06.22)의 제정에 따라 진로상담교사와 진로교육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유학기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진로탐색과 적성에 맞는 직업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업중단학생 유발의 한 원인이 되는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의 문을 더 넓혀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업부적응에 이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② 과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 점검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만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2015년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는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사교육 시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선행학습을 제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여야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학원은 단지 공교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보충교육의 장소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3) [권고72.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9	실행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수행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여부 모니터링

교육부에서 마련한 긍정적인 제도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아동의 여가 및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여가 및 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증진해주도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철저히 제도를 이행하고, 시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활동 프로그램인 '에딘버러 프로그램(한국명; 국제성취포상제)'을 이수한 학생이거나,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개인의 활동참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주중, 주말, 방학 기간 동안 봉사활동이나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가 인정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오락 활동 제도의 활성화를 마련한다.

② 과제 2. 학원의 일요일 휴업제 도입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동의 여가 및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관련 사설학원의 일요일 휴업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학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동참하여야 한다.

※ 2014년 NGO의 보고에 따르면 학원법에서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일부 시·도는 제한시간 기준을 24:00로 잡아 시간 규제조항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 1호를 개정해서 현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한정하고 점차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일 수”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권고73.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3.33

①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신설 및 시행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업의 기회를 얻고자 해도 입학기준이 높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됨으로써 결국 학급에서의 학력차는 더욱 벌어져 학업 및 학교 부적응으

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학교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와 직업교육정책과는 중등교과 과정에서 직업 및 진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필요한 수를 확보하고,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욕구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질 높은 맞춤형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특성화고교의 교사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전공자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장기적인 교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유명한 학교와 기업의 연계 제도인 dual system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부처별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현재 한국은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이 사각지대에 있게 될 위험이 크고 이는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결국 국공립유치원의 부족은 사립유치원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대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국공립 영유아교육기관 입학의 우선권과 무상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등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과목 교육은 방과후학교에서 전담하고, 학교 밖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활동, 봉사활동, 예체능활동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사업 실시) ②항 2호에서는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지원과가 담당해야할 업무라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고, 학습은 교원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시행령 제33조의4 ②항 2호를 삭제하고 본연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1.11.18]

(5) [권고74. 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8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50

① 과제 1. 학생 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후 전국학교에 보급

현재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와 정부와 민간의 대책들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예방교육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화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와 공감능력의 증진도 추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다 구체적인 예방교육 내용과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성가족부의 매체환경과와 협력해서 마련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강화와 사이버폭력 처벌기준 강화 및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선도교육 제도 마련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는 모든 예방교육은 조기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므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PC와 스마트폰 등에서의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장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학교와 중등교육차원에서 사이버폭력의 처벌기준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선도교육 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NGO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지침을 폐지하는 것도 인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특별보호조치

1) 망명신청 및 난민 아동(권고사항 64-67항)

(1) [권고75.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9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7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국적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등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발달 단계별로 출생등록, 보육지원, 의무 및 무상교육, 의료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가치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권고76.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9	중요도(5점)	3.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2.86

① 과제 1. 난민 아동의 구금배제 원칙을 관련 법, 지침 등에 명시

난민 및 망명희망자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구금에 관한 지침¹¹⁾에서 아동에 대한 내용(9.2. Children)을 활용하여 이들의 구금배제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가 없는 난민아동은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그러나 보호자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난민아동에 대한 구금여부와 법적 보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아동권리차원의 접근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 법과 지침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과제 2. 난민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마련

난민아동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구금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절차 하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UNHCR, 2012).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이나 조연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내용 역시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 연구 및 현재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난민 아동 실태와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제정이나 혹은 법 개정에는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11) UNHCR(2012). Detention Guidelines :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http://www.refworld.org/pdfid/503489533b8.pdf>. 2015년 7월 30일 검색

2) 이주상황아동(권고사항 68~69항)

(1) [권고77.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0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5	실행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보장 제도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개정(2013년 10월)으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¹²⁾,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중등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처럼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들다(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3). 따라서,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제출 없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

※ 초중등교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이 가능하게 된 최초 근거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보장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3), 이후 2006 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2008년에는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3, p.102).

(2) [권고7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8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모색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일 뿐 아니라, 최근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호관이 우리나라에서의 인종차별의 심각성과 함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¹³⁾하는 등 동 국제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단계로써 관련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관련 학계 및 NGO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3)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권고사항 70~71항)

(1) [권고79.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취약계층 근로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근로청소년 종합실태 파악 및 노동시장 진입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생계지원 시스템 및 근거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직업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근로기준법 적용 모니터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관련 기사: 유엔 권리,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http://www.ytn.co.kr/_ln/0104_201410091857263819. 2015년 7월 30일 검색

(2) [권고80.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의무화함으로써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여부와 이들의 근로형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야간근로가 금지되는 고용사업장 인가 요건을 강화하며, 위반 시(야간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범 고용사업장 발굴 및 포상을 통한 청소년 고용사업장이 아동·청소년의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② 과제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노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3) [권고81.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1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청소년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제도 법제화

관련 법(청소년보호법 등)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양성 및 배치 등)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4) [권고82.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현가능성(5점)	3.25

① 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설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다수 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홍보와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변칙적 근로환경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과제 2.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청소년 고용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청소년 근로와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와 처벌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잘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지역사회,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5) [권고83.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8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7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신속 지원

모든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사업주와 고용인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상호명

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 센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성추행 문제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사법기관과 의료 및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한다.

(6) [권고84.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진전노력 정도(5점)	2.61	중요도(5점)	4.1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1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벌 조항 명시

2014년 7월에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15세 전후를 기준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활동시간을 제한하고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우려 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과제 2. 연예기획 종사자 대상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교육 및 성관련 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연예기획사 종사자 역시 청소년 고용사업주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근로보호 교육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특히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내용(야간공연금지, 성추행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과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성적 착취(권고사항 72~73항)

(1) [권고85.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2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5	실현가능성(5점)	3.6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의 발견에서 치료,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② 과제 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배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 성폭력 범죄 집중 신고 기간 및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보육시설과 각급교육기관에서 아동의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2) [권고86.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46	중요도(5점)	4.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2	실행가능성(5점)	3.64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전담 조사관을 임명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보호 및 교육관련 종사자와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 종사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한 관련 직업 종사 금지 조항을 강화한다.

② 과제 2.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 및 조건만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최근 주된 성매매 유입경로로 알려진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환경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권고87.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1	중요도(5점)	4.6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4	실행가능성(5점)	3.68

① 과제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공론화되고 이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법기관에서의 전문교육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인력을 포함한 사법기관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담당 수사관, 형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4) [권고88.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4.3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상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실시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위험 수준과 성범죄 유형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들의 의무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5) [권고89.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1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3	실현가능성(5점)	3.39

① 과제 1. 성폭력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 여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해바라기 아동 센터와 같이 아동성폭력피해 지원시설이 지역별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6) [권고90.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7	중요도(5점)	3.6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현가능성(5점)	3.14

① 과제 1. 다국어 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시설 확충

성매매 피해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국어 전문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지원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및 생활시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인신매매(권고사항 74~75항)

(1) [권고9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1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6	실현가능성(5점)	3.50

①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와 같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

「인신매매의정서」 등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와 같은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더욱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방송매체를 포함한 홍보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당국의 비준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② 과제 2.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국제적 인신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범죄 알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수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가 간 조사와 처벌 등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본 법률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국제적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권고사항 76~77항)

(1) [권고92.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 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1	실현가능성(5점)	3.54

① 과제 1. 아동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매매 및 성매매, 이와 관련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 개별 범죄행위와 관련한 단속 및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제12조~제17조).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현재의 양형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지속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범조항(제25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 경우 전담 사법제도와 전문 인력을 배치·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 및 판례, 양형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타 국가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처벌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권고9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1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5	실현가능성(5점)	3.57

① 과제 1. 해외 아동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한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홍보 및 공익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아동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② 과제 2.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

해외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범위반 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78~79항)

- (1) [권고94.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6	중요도(5점)	3.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2	실현가능성(5점)	3.32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의정서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조항 내용 발굴

- (2) [권고95.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3.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39

-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음.

※ 법률적 사항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이나 병영체험활동, 나라사랑

교육사업 등이 전문적 검토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군사훈련 체험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3) [권고96.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6	중요도(5점)	3.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61

① 과제 1.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배포

국방부 소관 법률 소책자 및 군사지침서들의 내용에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에 일치되는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8) 소년사법운영 (권고사항 80~81항)

- (1) [권고97.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4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4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소년전문법원 설치

소년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기초 자료 조사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소년전문법원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소년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년전문법원 설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구금과정에서의 처우 개선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관련기관간의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적인 질문과 피해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보건복지부, 2012), 일련의 사건 처리 및 구금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 [권고98.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현가능성(5점)	3.50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적 지원 제도화

아동·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피의자 수사 시 신뢰 관계자 동석 및 가족의 참관을 허용하고,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3) [권고99.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소년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가족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소년 수용자가 면회, 서신, 전화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소년원 시설환경 및 처우(급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다. 과밀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정하고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② 과제 2.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직업훈련 의무화

소년수용자의 직로적성검사를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소년수용자가 적절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직업세계의 경향과 소년수용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소년원 내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적극적인 진학 및 진로지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재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권고100.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46

① 과제 1. 보호소년·위탁소년 대상의 청원, 진정 제도 운영 활성화

보호소년이나 위탁소년이 자신의 처우와 배치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청원, 진정 제도에 대하여 교육하고 공지하도록 한다.

(5) [권고101.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5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소년사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 확대

소년사범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 현황 및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의무화

소년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소나 소년원과 같은 소년 선도기관 및 해당 프로그램에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소년사범을 대면하고 지원하는 인력들이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권고102. 유엔청소년사범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

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범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3.6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8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소년사범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의 조연과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소년사범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와의 협력관계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와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담당자가 해외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9)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권고사항 82~83항)

(1) [권고103.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4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현가능성(5점)	3.57

① 과제 1. 범죄 피해 유형별 피해 아동 지원 확대

스마일센터와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피해 아동의 상황에 따른 법적·심리적, 주거·의료적 지원도 확대·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스마일센터 뿐 아니라 일반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와 같은 곳에 배포함으로써, 범죄 피해 지원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교사, 관련 공무원,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등)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태와 지원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 및 교육 시 활용한다.

② 과제 2. 범죄피해 및 목격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범죄 피해 목격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을 갖

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목격자가 신변노출로 인한 2차 피해나 범죄피해 목격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와 심리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기타분야

1) 국제 인권조약 비준 (권고사항 84항)

(1) [권고10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3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6	실현가능성(5점)	3.17

①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점검 착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도록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자국민과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와 외국인정책과 그리고 외교부의 인권사회과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사회보장, 사법제도, 고용제도, 과세, 선거 및 교육제도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의 가입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UN 강제실종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 및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입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2015년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로 연구진행을 예정하고 있어 조속한 가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NGO의 의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전입학 절차상 제출서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주 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주아동의 전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도 동 협약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2)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권고사항 85항)

(1) [권고105.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3.6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2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인권관련 지역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채널 명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동권리협약 최종권고 이행을 위한 계획(2014년~2016년) 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 특히 외교부 인권사회과가 주도적으로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와 함께 이를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히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아동인권 NGO 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3) 후속조치 및 배포 (권고사항 86~87항)

(1) [권고106.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42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8	실현가능성(5점)	3.46

① 과제 1. 사안별 담당 부처 담당과에 권고사항 통보 후 이행사항 취합·점검(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및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및 전국 관련 기관 배포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 권고사항이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하여 본 협약과 이행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도록 한다. 아동 권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고 이행계획에 관하여 요청하였고, 2014년에 권고사항에 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련부처들의 협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중간보고에 대한 NGO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회의결과에 관한 해당 내용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각 부처에서 정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시 권고사항들이 빠짐없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2) [권고107.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0	실현가능성(5점)	3.92

① 과제 1. 다양한 형태의 협약 권고사항 홍보전략 개발·시행 (공익광고 및 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쇄매체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공익광고와 동영상으로 제작으로 TV나 뉴미디어 등의 매체들을 이용하여 전국의 모든 관련 기관들과 전 국민에 홍보하도록 예산을 확보·실시하도록 한다.

Ⅲ. 나오는 글

이 연구는 광범위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에 대해 정부정책 수행주체인 부처별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이 요구 하듯이 해당 과제 수행이 어렵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에 대한 충실한 분석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수적 계획을 수립하기 쉽고 민간부문에서는 협약 제4조가 제시하고 있듯이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 권리 실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받아들인 ‘권고사항 이행사항 정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한 기본자료는 2014년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107개로 세분화한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을 누락없이 검토하고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기 모니터링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작업이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주제 중심으로 권고사항을 재구성하여 통합적 이행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권고사항 이행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책과제도 단계별 이행과정이 있으므로 부처별 과제 설정 시 단계별 목표수준과 타임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교육부 설명자료(2013.10.1.).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보도 관련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5.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수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0.12.28.).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0.8.30.).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5. 11. 11). 인권위, 기업과 인권 교육 실시... 인권경영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보도자료(2015. 11. 10).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확정.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보도자료(2015. 9. 16).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전달.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연구보고 14-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종철(2014).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아동노동 연루와 관련해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 -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의 역할모색 자료집.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철홍(2013).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자료집. pp. 199-232.
- 내일신문 대구경북(2015. 9. 24). 대구 죽전초등학교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 <http://blog.daum.net/sakgane/1868>

대법원 보도자료(2015. 2. 6). 대법원,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7).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15. 2. 5).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교복 입은 시민' 육성.

양현아(201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국내이행 실태.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pp. 62-94.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2013). 여성·아동 미래비전. 서울: 대한민국국회.

여성가족부(2015.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5.8).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서울: 여성가족부.

유종길(2011).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pp. 245-255.

유승민의원 대표발의(2014). 인권교육지원법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보건복지부 번역본).

이인석(2011). 사법부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pp. 287-297.

정책뉴스(2015.0 05. 08).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
 2015년 7월 29일 검색

정해숙, 최윤정, 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입양원. 헤이그 협약의 의미.
http://kadoption.or.kr/adoption/adoption_hague_mean.jsp. 2015년 7월 20일 검색

한국일보.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http://www.hankookilbo.com/v/618f7e758048436ea53c0c837e64cc26>. 2015년 7월 20일 검색

현소혜(2013). 개정 「민법」 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가족법연구, 27(1), 85-114.

홍관표(2015).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

- 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pp. 81-102.
- Chapman, M. V., Wall, A., & Barth, R. P. (2004). Children's Voices: The perception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93-304
-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세이브더 칠드런 번역(2011). FIVE YEARS ON: A global updat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 유엔아동폭력연구 후속조치를 위한 NGO자문위원회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Depanfilis, D., & Plotnick, R. D. (2009).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Transaction.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2009). General Comment No. 12 -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 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첨부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및 소관부처(안)

1.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9 (유보 조항)	1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	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과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단심제 적용 범조항에 18세 미만 아동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조항 추가 등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방부 인권담당관
10-11 (입법)	3	1)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과제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검토 연구(협약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된 외국판례 연구 등) 및 국제인권규범의 재판 적용례 촉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의 아동인권교육과정 제도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4	2)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검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제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12-13 (조정)	5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등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 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상근 전문연구원 채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6	2)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 과제 1. 아동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소통 및 조정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4-15 (국가 행동 계획)	7	1)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 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 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과제 1.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협약에 기반한 이행점검 강화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이행 촉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8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아동·청소년인권팀
16-17 (독립 모니터링)	9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팀의 조직 및 인원 확대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인권정책과, 아동·청소년인권팀
	10	1)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과제 1. 아동예산의 정의와 산출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매년 변화추이를 점검·평가하고 이슈화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청소년정책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11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 평가하고, 아 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 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이 지역별 현황 및 재정자립도와 아 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 실시 과제 2. 실태 파악 후 지역별 격차가 큰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 조사업 환원 검토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12	3)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 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 공할 것 -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 이 측정 촉구 과제 1.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 도 입 연구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인지예산 생산 시 18세 미만 아동 예산 생산 의무화 검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13	4)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 수립 도입할 것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 재원배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평가 실시 과제 2.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 성과를 수치화한 자료 개발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등)와 국민 관심 촉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사회재정성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4	5)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및 효과적 모델 개발)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5	6)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입법부 및 행정부 예산안 과정 감시활동 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가족지원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법무부 난민과
	16	7)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 권리관점 반영 촉구(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아동·청소년친화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 등 공론의 장 마련)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복지예산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20-21 (자료 수집)	17	1)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 -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 과제 1. 주요 국가통계자료에서 아동(18세 미만) 및 청소년(9-24세) 연령기준별 통계자료 생산 제도화 : 범조항 반영 과제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조사의 체계화를 통해 중복과 누락 방지(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인구동향과, 복지통계과
	18	1)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과제 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의 인권교육 시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인권역량 강화 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권교육 제도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2-23 (보급, 인식 제고, 교육 연수)	19	2)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과제 1.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체계화(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관련 범조항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명시)	교육부 교원복지연수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청년취업지원과, 근로기준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20	3)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 광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아동·청소년인권팀
24-25 (국제 협력)	21	1)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과제 1.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ODA사업의 아동인권 관점 시행(사업효과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평가 실시)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외교부 개발정책과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2	2)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를 참고할 것 과제 1.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와 영향 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반영)	외교부 개발협력국
26-27 (아동 권리와 재계)	23	1)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제를 마련할 것 과제 1.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공개	외교부 인권사회과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24	2)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과제 1. '아동노동착취없는(아동친화기업) 제품' 인증 및 활용 촉진 과제 2.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검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5	3)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과제 1. 기업대상 아동권리 감수성 프로그램 실시 및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26	4)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과제 1. 자유무역협정 관련 아동 인권영향평가 방안 개발 및 제도화 연구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II.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8-29 (비차별)	27	1)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과제 1. 인종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인식 확대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28	2)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과제 1.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예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공개로 인한 차별로부터 아동 보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29	3)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과제 1. 임신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제 2.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이나 아동 유기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현실화(현재 15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30-31 (생명, 생존 및 발달)	30	1)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2-33 (아동 이익 최우선)	31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34-35 (아동 견해 존중)	32	1)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과제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도록 함)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33	2)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과제 1. 학교 및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장애가 되는 법규정 및 기존 참여보장 법규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예 : 초·중·고·대학 상 학칙제·개정 과정에의 학생참여, 징계 재심청구권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4	3)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과제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5	4)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 참여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36	5)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과제 1. 일반논평 12호의 참여권 이행방안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자료로 개발·보급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Ⅲ.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36-37 (출생 신고)	37	1)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 1. 출생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등록제 형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과제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 실시 검토	
38-39 (사상 양심 종교 자유)	38	1)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제 1. 학교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대체과목 마련을 통해 종교교육 선택권을 보장 등) 및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 주기적 점검	
	39	2) 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제 1. 종교적 신념(이슬람교 등)이나 식습관(채식주의)에 따른 학교급식 메뉴의 배려(다양성 고려 및 강제 급식지도 지양)			
40-41 (평화 결사 집회 자유)	40	1)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반영도 제고	

IV.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2-43 (체벌)	41	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권익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1.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학교규칙의 체벌 관련 규정 실태 조사 과제 2.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및 관련법의 홍보와 교육	
	42	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현행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매월 1회 송출 확대 및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훈육 효과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과제 2. 체벌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	
	43	3)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원정책과
		과제 1. 대안적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긍정적 사례 발굴·보급(학생자치법정, 회복적 프로그램 효과 검증 등) 과제 2. 시·도교육청의 학교체벌 신고 및 중재 체계 도입 및 사전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44-46 (학대, 방임, 폭력)	44	1)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화와 위반 시 대책 마련 과제 2. 전국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과 연수 실시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 인구비례에 따른 확대 설치 및 전문가 배치 과제 2.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6	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제 1. 아동학대 및 폭력, 성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47	4)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 1. 유엔 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 권고사항 기준으로 정부의 폭력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방향 개선 실시	
	48	5) 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분야의 광범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49	6)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제 1.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들과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구축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7-48 (가정 환경 상실 아동)	50	1)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의무교육 실시 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51	2)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 1. 학대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확대와 상담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강화 과제 2. 시설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별도의 인원, 기구·조직 마련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52	3)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원가족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 강화 과제 2. 원가족 찾기 및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확대		
	53	4)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대안양육 지속 및 원가정 복귀 결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가정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구 마련		
	49-50 (입양)	54	1)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정비	
	55	55	2) 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해외 입양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 능통 직원 채용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56	3)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제도 강화 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및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안 마련	
	57	4)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제 1. 미혼모의 입양 또는 직접 양육 의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관련 정보(양육 지원 정보 등) 제공 과제 2.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58	5)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과제 1. 아동 입양 시 사법기관(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와 민법상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59	6)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외교부 조약과
		과제 1.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 정비	

VI.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51-52 (장애 아동)	60	1)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과제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와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 2.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61	2)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과제 1. 특수교사 증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확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 2.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62	3)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과제 1.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 증액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 2. 장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재원에 대해 관련 법/시행규칙 명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63	4)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장애아동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53-54 (건강 및 보건 서비스)	64	1)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과제 1. 이주·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무상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55-56 (정신 건강)	65	1)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 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제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조사 및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57-59 (청소년 보건)	66	1)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 예방 교육 확대 실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67	2)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과제 1. 유해식품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과 사후처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68	3)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과제 1. 인권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및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60-61 (사회 보장, 생활 수준)	69	1)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복지재원 배정 및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법률 명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62-63 (직업 훈련 생활 지도 포함 교육)	70	1)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국무조정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제 1.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 : 초·중·고·대·평생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교육 3주체 및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 논의	
	71	2)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교육부 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학교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제 1. 고교평준화를 위한 서열화 관련 모든 제도 점진적 철폐	
		과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 점검	
	72	3)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수행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여부 모니터링	
		과제 2. 학원의 일요일 휴업제 도입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73	4)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신설 및 시행	
		과제 2. 부처별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74	5) 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학생 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후 전국학교에 보급 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강화와 사이버폭력 처벌기준 강화 및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선도교육 제도 마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과정운영과

Ⅷ.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5, 36, 37(b-d), 38-40)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64-67 (망명 신청 및 난민 아동)	75	1)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법무부 난민과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76	2)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제 1. 난민 아동의 구금배제 원칙을 관련 법, 지침 등에 명시 과제 2. 난민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제정	
68-69 (이주 상황 아동)	77	1)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난민과 교육부 학교복지정책과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보장 제도화	
	78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모색	
70-71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	79	1)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과제 1. 취약계층 근로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지원 확대	
	80	2)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 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과제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81	3) 아동의 번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 1. 청소년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제도 법제화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2	4)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과제 2.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83	5)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 1.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신속 지원	
	84	6)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과제 1.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벌 조항 명시 과제 2. 연예기획 종사자 대상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교육 및 성관련 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72-73 (성적 착취)	85	1)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과제 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	
	86	2)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과제 2.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87	3)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과제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88	4)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과제 1.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상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실시	법무부 보호관찰과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89	5)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과제 1. 성폭력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90	6)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과제 1. 다국어 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74-75 (인신매매)	91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와 같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 과제 2.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국제형사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76-77 (OPSC)	92	1)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과제 1. 아동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정 과제 2.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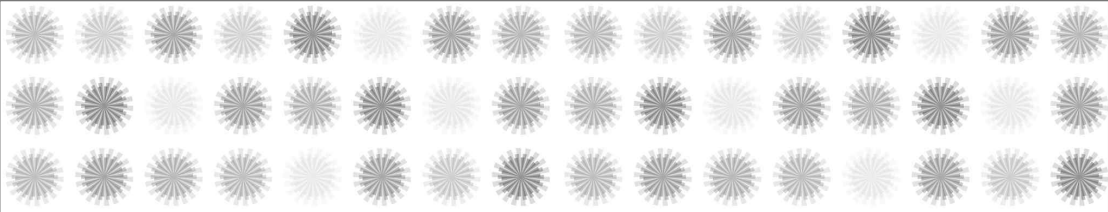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93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과제 1. 해외 아동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범죄처선진화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2.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국제형사과
78-79 (OPAC)	94	1)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권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95	2)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국방부 법무부
96	3)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과제 1.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배포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80-81 (소년 사법 운영)	97	1)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과제 1. 소년전문법원 설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법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과제 2.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구금과정에서의 처우 개선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98	2)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적 지원 제도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99	3)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법무부 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소년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가족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2.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직업 훈련 의무화	법무부 직업훈련과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00	4)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1. 보호소년·위탁소년 대상의 청원, 진정 제도 운영 활성화		
	101	5)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1. 소년사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 확대				
		과제 2.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의무화		
102	6)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범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과제 1. 소년사범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의 조언과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82-83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103	1)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제 1. 범죄 피해 유형별 피해 아동 지원 확대		
		과제 2. 범죄피해 및 목격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IX. 기타 권고사항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4 (국제 인권 조약 기준)	104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국인정책과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점검 착수)	
85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105	1)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제 1. 인권관련 지역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 채널 명확화	
86-87 (후속 조치 및 배포)	106	1)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사안별 담당 부처 담당과에 권고사항 통보 후 이행사항 취합·점검(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및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및 전국 관련 기관 배포	외교부 인권사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107	2)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과제 1. 다양한 형태의 협약 권고사항 홍보전략 개발·시행 (공익광고 및 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쇄매체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인권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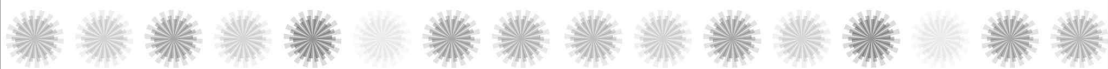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지정토론

- ▼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 ▼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 ▼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 ▼ 차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현행법제도의 정비



▮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아동권리협약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 규범력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학회를 계기로 아동권리협약이 명실상부한 ‘실정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법학자의 관점에서 약간의 커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권리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아동권리기본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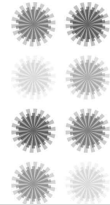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아동복지법이 실질적인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권리협약이 적용되는 것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의 친족편에서도 최근 일련의 개정으로 아동권리의 실질적인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친족편 역시 ‘혼인’, ‘친자관계’, ‘후견’ 등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아동’ 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을 두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면접교섭은 ‘이혼의 효과’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입양 또는 위탁양육되고 있는 아동과 친부모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할 국내법상의 제도들 중에서는 특히 친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권고사항 42~43항의 ‘체벌의 전면금지’에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체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해 행해지는 ‘대안적 훈육방법’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비해 아동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벌을 대안적 훈육방법으로 대체한다는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히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가정에서는 ‘모든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가 행해지기 때문에 학습과 사회공동생활의 영역만을 지도하는 학교에 비해 훈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아동권리 옹호는 단순한 정책적 목적 달성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는 부모의 친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부모에 의한 양육은 부모와 아동 모두의 기본권적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제한을 가하는 모든 조치는 기본권 제한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제반 조치에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가정법원의 규모나 가용자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이상론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아동복지 실무계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장벽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가정법원의 역량강화와 기능 활성화가 올바른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제적 아동인권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ㅣ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1.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의지 부족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에는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이행법을 없이 국제인권조약과 일반적 국제인권법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효력을 가진다.

국제인권규범의 준수 및 이행에서 법원(法院)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헌법 제10조)의 보장은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는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최소한의 보장기준으로서 국제인권 규준을 인정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을 적극 수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의 직접 적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예를 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조제3항은 당사국간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했다.¹⁾ 헌법재판소도 국제인권조약의 원용에 인색하다. 예를 들면, 구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위헌제청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바로 인정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²⁾

물론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은 물론 다른 인권조약을 원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아동

1)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2)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권리협약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친어머니가 가해자인 친아버지 및 동거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다.³⁾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5조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당사국에게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원용했다. 불법행위의 위법성 인정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의 인권 보장의 의미(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헌법적 의미(헌법 제6조제1항)를 망각한 것이다. 사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최소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을 통해 인권 보장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2. 국제인권 규범 이행의 입법적 의무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조약에서 규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사법부는 인권조약기구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을 구체화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의 조약이행에 대한 입법은 이제 드물지 않다. 2000년대 이후 주요 다자조약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난민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2013가합36163

이행에 관한 법률⁵⁾ 등이 있다.

이행법률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약 자체에서 국내적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이행 법률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조약에서 국내 입법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존 국내 법령과 조약 간 복잡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절실하다.

3. 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의 핵심 내용

가.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관청의 설치

최근 이민 업무를 체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적인 이민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민행정의 영역이 외교, 국가안보, 노동, 통상, 보건, 교육, 주거, 복지, 세제 등의 정책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아래 ‘이민처’로서 설치하는 의견이 있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 생활이 지역에서의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변용과 확대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각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민처는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규제행정 또는 행정계획 등에 집중하면서, 급부행정 및 조성행정의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집행을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그 구성은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등이다.
- 5) 이 법은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에서 아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범무부장관이다(동법 제4조). 그 구성을 보면, 제2장 아동반환 지원절차 등, 제3장 재판절차, 제4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청소년권리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관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거나 중복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 각종 법률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나.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첫째, 아동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아동의 인적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입법·사법·행정의 유기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아동예산의 확보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서 국가 및 기타 예산에서 아동을 위한 자원의 확인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할당된 직·간접 국가 및 기타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매년 아동예산을 발표하는 국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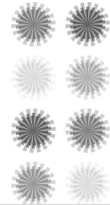
셋째, 아동인권지수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아동인권지수는 아동인권의 보장 정도에 대한 평가·측정을 도모한다.

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옴부즈퍼슨 설치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에 관하여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옴부즈퍼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하되, 전형적인 옴부즈퍼슨 제도를 좇아 국회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 보장 문제는 여·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입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일반논평 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인권 기구의 역할(2002)」에서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Ⅰ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
현황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토론

이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의미를 분석하고, 현재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귀중한 자료이나, 상당히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각각의 조문의 의미와 현재 법과 정책이 얼마나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문을 충실히 반영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꼼꼼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아동권리분야에서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얼마나 산적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 영역별로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현재 이행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이행이 가장 미진한 부분과 이에 따른 방해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전체를 통해 다소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의 각 장별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전문가조사 결과가 이후 국내이행 향상방안에 반영되고 있는 정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이행수준이 시민사회가 이행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영역(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권리영역에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가 일반 시민사회의

수준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선도적으로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괴리가 큰 영역들(성적 착취와 학대, 경제적 권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선진국의 입법례를 통해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도 현실에서 그러한 제도의 이행이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시민사회에서의 이행수준이므로, 정부의 이행수준과 시민사회 이행수준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이행 향상방안에서는 일부 홍보와 예방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향상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제시되다 보니 각각의 정책제언에 있어서는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살펴본 방해요인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방해요인이 대중의 인식부족이라면 입법에 앞서, 또는 입법과정에서 대대적인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부족이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영역별로 국내적용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진 내에서 일정 기준(가장 보편적인 권리부터 또는 협약이행 수준평가결과 가장 이행수준이 낮은 것부터)을 정해 이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부터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주제발표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정책과제 모 색>에 관한 토론문

이 보고서는 UN의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각각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2017년 제5·6차 종합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원고에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일부는 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낙태권 허용에 있어서는 앞서 주제발표 1의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정책과제의 보다 실질적인 이행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 이행방법에 대한 고민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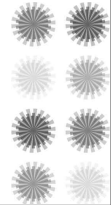
우선,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별로 150개가 넘는 과제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추후 모두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수행가능성 등을 구분하여 중요성이 높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손쉽게 수행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제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지만 있으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방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므로, 각각의 과제이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함께 산출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과 더불어 정책 이행의 실행가능성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과제 이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일수록 관련 부처들 간 시너지를 모으고 이러한 권고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의지를 격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며, 특히 소관부처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느 기관 또는 조직이 이들 부처 간의 협력을 조직하여 정책과제 이행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혹시 이 부분을 고민해보셨다면, 이에 대한 연구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른 연구진의 보고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은 직접 연구보다 쉬운 일이기에,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런저런 제언을 하였으나, 두 보고서가 국내에서 아동권리 이행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렇듯 귀중한 자료를 산출해준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주제 1> 에 대하여

1.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고찰하고 충실하게 이행사항을 파악한 연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견보다는 의문이나 의견 위주로 다음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세부 조항에 대한 조문 분석, 이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 실태, 그리고 평가, 국외의 입법례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몇몇 조항에서는 이런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동일한 체제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조문 분석이나 평가(시사점 논의) 등에서 각 조문별로 서술하는 층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하신 연구자들의 전공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세부 조항과 관련하여

- 1) 연령 논의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연령의 혼란을 이야기 하면서 ‘아동기본법’의 채택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아동기본법’에서의 아동 연령이 법적으로 정해졌을 경우 연령 문제는 상당히 명시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기존에 정해진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의 연령과 겹쳐지는 문제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제7조 ‘출생신고...’ 관련해서 ‘평가’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베이비박스’나 공공시설 등에 출생신고 이전에 분리되는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나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제13조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학칙’은 현재 ‘학교 규정’, ‘학생 생활규정’ 등으로 변화 되었기에 이를 고려한 용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제15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 관련해서 ‘2) 법과 정책’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이 부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만, 청소년 활동의 운영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표현의 자유와 연계하여 고려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5)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나 학교 문화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과, 법과 정책을 갖춘 것과 달리 현실 상황에서 실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행 사항 점검이 쉽지 않다는 측면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한 ‘평가(및 시사점)’에서 관련 입법이나 법령의 강화 등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제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 6) 제22조 ‘난민 아동..’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난민법이 통과되어 적용되고, 최근 시리아 난민 수용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좀 더 상세히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7) 제30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관련해서 ‘4) 평가 및 시사점’에서,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국민을 배출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귀중한 인적 자원을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서술은 인적자본론의 시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인권친화적인 서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이중 언어 문제는 이주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문화권으로만 보고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 관련하여 ‘2) 법과 정책’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다루는데, 교육과정의 명칭을 ‘2012년 개정 고시된’으로 보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2012년 고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식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인권교육 반영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범교과 주제 영역이 10개 내외로 조정되고, 그 안에 인권교육이 하나의 주제로 정리되고, 인권교육 밑에 몇 개의 하위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유아교육과정이나 특수교육의 교과 교육과정 등에서 인권교육이 담겨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점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2>에 대하여

1. 전문가 대상 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그나마 간략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관련하여 이견보다는 의문이나 의견 위주로 다음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부록에 제시된 내용을 서론에서 같이 제시하여 주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권고사항의 영역별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일괄 표로 제시하였다면, 영역별로 중요도나 이행 가능성 등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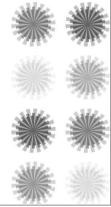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3. 권고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 4. ‘과제 2’ 제안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질병 결석’으로 하였는데,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더불어 현재 제시된 ‘과제 2’에 대하여 ‘과제 2. 학습권 보장 관련한

사항'을, '과제 3. 임신출산에 대한 결석 부분' 제도화 방안을 분리하여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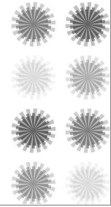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 2) 권고 6과 관련하여, '교육부(보육과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놀 권리, 문화 향유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권고 15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빈곤 및 취약 계층 아동, 난민,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예산 이외에 이들에 대한 예산 전달 과정 등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4) 권고 18의 '과제1'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권고사항 19'와 더 큰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5) 권고 27의 '과제1'에서,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차별금지법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입법화 노력'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과제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6) 권고 40의 '과제1' 관련하여, '학교 규정' 등에 권고 내용을 명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7) 권고 63의 '과제1' 관련하여, 통합교육에 대한하여 통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교육 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8) 권고 71의 '과제 2' 관련하여,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 조항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인권의 측면에서 학원이 갖는 권리와 충돌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실제적인 방안에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권고사항 71과 관련하여 '진학이나 입시와 관련하여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교육이 갖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의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9) 권고 77의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교육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이탈하여 노동의 현장으로 몰리고 그 가운데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등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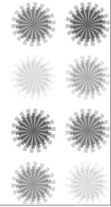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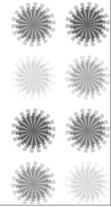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Ⅰ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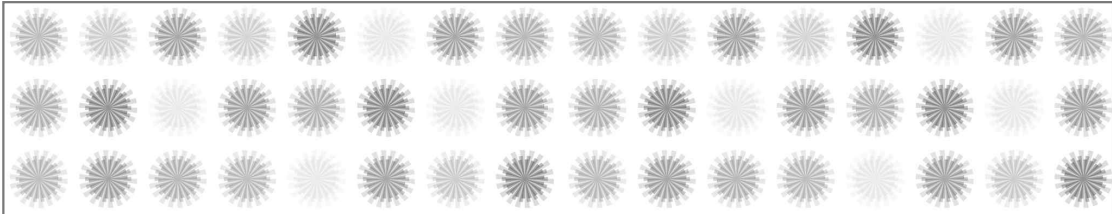


▮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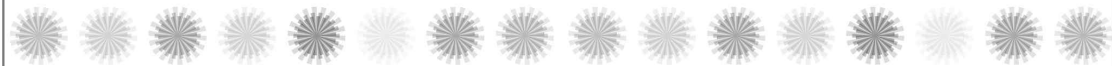


Ⅰ 차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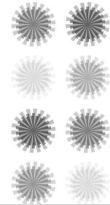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포스터 발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비계설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 고은미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 박순호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연구목적

오늘날의 대학은 전인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주는 체험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면서 사회봉사기능을 대학교육의 경쟁전략의 하나로 특성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9학년도부터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봉사활동이 학습자의 현상이해 능력 및 실천적 지식을 제고할 수 있으면서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수자의 비계설정이 포함된 교육봉사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D대학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생 69명이다. 실험집단인 A반을 대상으로 비계설정이 제공되는 교육봉사활동의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현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을 고려한 비계설정이 제공되었다. 비교대상인 B반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봉사활동인 유치원 참관 및 그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자신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 받은 학습자가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 및 학생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Ⅲ. 연구결과

AB반간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사후 점수간 증진량을 살펴본 결과, A반은 사전 평균 88.69점($SD=8.96$)에서 사후 평균 94.31점($SD=10.48$)으로, B반은 사전 86.38점($SD=11.61$)에서 사후 82.28점($SD=23.89$)으로 변화하여 A반에서만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났다. ($p < .01$). 또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 점수의 변화량을 살펴 본 결과 역시 A반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났다 ($p < .01$). 이러한 결과는 면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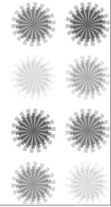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은혜 모르는 늑대’라는 동극을 하였다. 동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고 처음엔 너무 막막하였다.... 그리고 당일 날 아이들, 특히 내가 맡은 해님반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다. 준비한 만큼이나 보람차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재미있어요”, “또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하였다.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학년 H학생 저널)

Ⅳ. 결론

본 연구는 교육봉사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현장이해 능력 및 실천적 지식을 제고하면서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교수자의 비계설정이 포함된 교육봉사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봉사활동에 비계설정을 제공받은 집단은 자기효능감 총점 및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향후 예비유아교사교육에서 교육봉사활동의 방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key word : 교육봉사활동(educational service-learning), 비계설정(scaffolding)
 예비유아교사(pre-early childhood teacher),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권 분석



Ⅰ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인권(human rights)은 사람의 권리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가 곧 인권이다(윤찬영, 2013). 아동인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아동이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아동의 인권을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인권의 보편성은 국제적 조약을 통해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국가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것은 곧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으로서 제도적 도구가 되어 아동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객관적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에 나타난 아동인권의 실체와 그 보장 수준을 분석하여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과 관련하여 일반법 또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아동복지법을 연구범위로 한다. 그리고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인권의 내용을 분석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의 실체와 그 보장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권리는 개념과 속성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배화옥 외, 2015) 법률상의 권리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김광병 외, 2012; 현외성, 2011) 3가지 즉,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수속적 권리를 분석틀로 사용한다. 그리고 아동인권의 보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내용의 강행규정, 노력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그 정도를 파악한다.

Ⅲ. 연구결과

1. 실체적 인권내용 및 보장수준

아동의 실체적 인권은 7가지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안전한 양육,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 고려,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이 그것이다. 보장수준은 거의 모두 강행규정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는 임의규정으로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2. 절차적 인권내용 및 보장수준

절차적 인권은 2가지로, 해당 위원회 참여를 통한 아동인권보장과 아동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그것이다. 보장수준은 거의 모두 강행규정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의규정으로 낮은 것도 있었다.

3. 수속적 인권내용 및 보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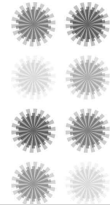
수속적 인권은 6가지로, 정책·계획 수립 및 조사의무, 홍보·교육의무, 상담·지도의무, 행정조치의무, 시설설치의무, 전문 인력 배치의무가 그것이다. 보장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에서 노력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보장수준이 보통이거나 낮은 것도 있었다.

V. 결론

각각의 해당되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켜지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보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벌칙을 확대하여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실체적 인권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했을 경우에 권리구제절차를 통한 보장과 동시에 벌칙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key word : 아동인권(human rights of child),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평가인증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대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인식



- Ⅰ 김성인 (인화어린이집 원장)
- Ⅰ 이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연구목적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가족유형의 변화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우수한 보육환경, 보육교사, 보육활동과 같은 보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가 보육의 질 향상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과 컨설턴트 활동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현장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평가인증 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자질에 대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16명의 보육교사와 95명의 원장이다. 연구도구로는 평가인증 지침서를 바탕으로 강현자(2011)와 박성경(2012)의 설문지를 일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가인증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직위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기관유형, 기관규모, 학력, 전공, 경력, 연령)에 따른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자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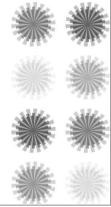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첫째, 평가인증 컨설팅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보육교사와 원장이 가장 높게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세부적인 결과에서는 보육교사와 원장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갖는 직위와 이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령이 많은 보육교사와 원장집단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정보, 컨설팅이 더 필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원장들은 스스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평가인증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준비하는 젊은 보육교사 집단, 그리고 보다 많은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40세 이상의 원장집단의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나 자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의 태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평가인증 컨설턴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컨설팅 전에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 메타 컨설턴트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주관적인 컨설팅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나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육교직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다양화된 컨설팅 방안을 현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시스템과 연계된 전문성향상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key word : 평가인증, 평가인증컨설팅, 평가인증컨설턴트

유아의 미디어 사용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미디어 사용은 어린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데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오락, 게임 등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디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이 연구들 역시 이용 현황이나 실태, 부모의 인식 등으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4세 유아의 컴퓨터, 전자게임, 휴대폰(스마트폰)의 이용 시기와 주중 이용정도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5차년도에 응답한 만 4세 유아 자녀를 가진 1,703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미디어 최초 이용시기와 주중이용 정도가 우울·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신뢰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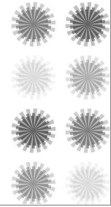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첫째,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컴퓨터와 개인 게임기 이용 시작 시기는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휴대폰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주중 미디어 이용 정도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주중 컴퓨터와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는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주중 유아의 휴대폰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과 교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컴퓨터나 게임기는 우울이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휴대폰시작 시기나 주중 이용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에서 볼 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부터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게임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미디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유아들에게 교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 중독에 관한 문제는 성폭력, 교통안전 등 다른 안전 교육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교육 중의 하나로 추가하여 자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휴대폰 사용은 유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디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key word : 컴퓨터, 개인 게임기, 휴대폰, 이용 시작시기, 주중 이용정도, 우울·불안, 공격성

아동양육자의 과보호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인식



- ▮ 신수희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 ▮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연구 목적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양육자는 영유아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행동 경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양육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아동양육자는 종종 적절한 보호행동과 과보호행동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과보호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보호행동에 대한 척도는 연구자가 과보호행동이라고 규정한 문항을 제시하고 양육자는 이를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나 척도개발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양육자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과보호행동이라고 인식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이들의 어머니 즉, 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과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I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세~5세반 유아 각 50명의 어머니와 할머니 150쌍(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아동 각 50명의 어머니와 할머니 15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과보호 양육행동 척도 및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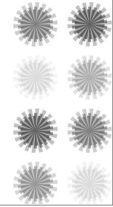
육태도검사 척도에서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과보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자에게 각 문항의 양육행동이 해당연령의 아동에게 얼마나 과보호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치와 그래프를 제시하고, 과보호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인식차이를 쌍체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할머니 세대는 특정 행동을 과보호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어머니 세대는 특정 행동을 과보호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 세대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머니 세대의 경우 남아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과보호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할머니 세대보다 높았다. 이는 어머니 세대의 경우 남이는 보다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하고, 여아는 보다 보호적으로 키워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key word : 과보호행동, 유아, 아동,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기보호 양상이 방임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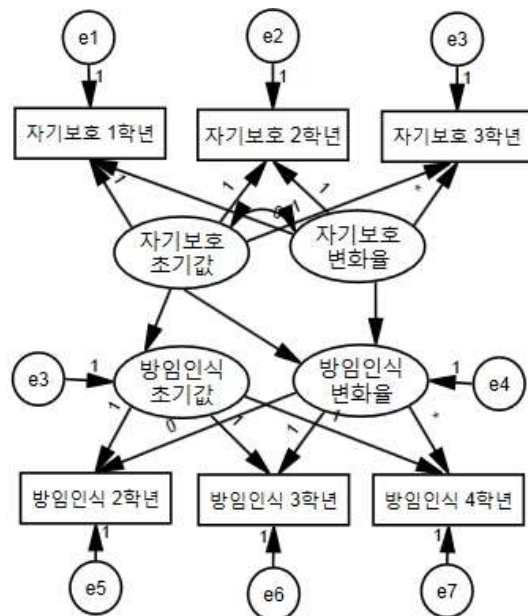
Ⅰ 양경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Ⅱ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도시 핵가족화,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현상과 모의 취업률이 증가 등의 사회의 경향성으로 인해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은 자기보호 상황에서 배고픔, 외로움, 안전의 위협, 또래들의 압력의 노출이 용이하며, 아동은 자신이 소홀한 돌봄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자기보호가 방임인식의 예측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임은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 자기보호는 측정이 용이하고 설문지 작성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덜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쉽고, 그로 인해 개입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방임에 아동의 자기보호가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자기보호 아동들에 대한 개입이 아동방임의 예방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보호와 아동방임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의 자기보호의 변화양상이 아동 방임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패널 1~4차년도에 1,803명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AMO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후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기보호 변화양상과 아동 방임인식변화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보호, 방임인식의 변화양상을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동의 자기보호(요인계수 : 0, 1, *)와 방임인식(요인계수 : 0, 1, *) 모두 세 시점의 평균변화양상이 2차 시점까지는 증가(자기보호) 또는 감소(방임인식)하다가 3차시점에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변화궤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자기보호 초기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방임인식도 심각해졌다(자기보호 초기값→방임인식 초기값: $\beta = .230, p < .001$). 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자기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2학년 때의 아동이 방임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의 자기보호 초기값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방임인식이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였다(자기보호 초기값→방임인식 변화율: $\beta = -.068, p < .001$). 즉,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자기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이 방임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결과에서 아동 방임인식의 변화양상이 감소하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 1학년에 자기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인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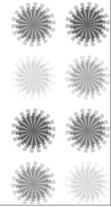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기, 특히 1학년 시기의 자기보호 수준이 방임의 예측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1학년 아동의 자기보호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부는 취업부모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호 편의 및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 3)’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대상조건으로 학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유년기에 야간돌봄 받던 아동을 학령기 진입 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의 방임인식 변수가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key word : 자기보호, 방임인식,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를 위한 녹색식생활 함양 프로그램 개발



- Ⅰ 이형민 (우송대학교 아동복지전공 초빙교수)
- Ⅰ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건강)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모두 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을 보육·교육 과정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아의 교육권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교사를 통한 적절한 식생활 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녹색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이며 동시에 응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유아교사의 녹색식생활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11개 기관, 유치원 14개 기관으로 총 25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유치원교사 99명(55.9%), 보육교사 78명(44.1%)이었다.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과 녹색식생활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에 대한 문항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직 교사 10명, 각 기관의 장 5명, 녹색식생활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 범주 및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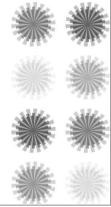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녹색식생활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교사들이 녹색식생활의 중요성을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절반 이상의 교사는 녹색식생활을 실제 적용하여 실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적절한 교재교구의 부족과 교사 대상 교육 부족이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녹색식생활에 관한 교사교육 실시와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원칙으로는 기관에서 유아의 식생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전통 문화를 통하여 감사와 절제, 배려, 공경, 나눔 등의 전통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녹색식생활의 핵심가치(환경, 건강, 배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녹색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 전문가 2인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각 1명과 각 기관의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1)음식과 우리 몸 (2)올바른 식생활 (3)밥과 쌀 (4)채소와 과일 (5)친환경 농산물 (6)우리농산물 (7)전통 음식 (8)음식물쓰레기와 지구환경이 최종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 주제들은 누리과정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가정과 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친환경 음식 만들기와 전통음식이다. 만들기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하고, 한국형 식생활을 계승하고 실천하며, 식생활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정서적 나눔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녹색식생활의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ey word : 녹색식생활,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유치원평가 참여에 따른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과 소진



- Ⅰ 이경미 (꿈나라유치원 교사)
- Ⅰ 이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연구목적

1980년대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유아교육기관은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로 유치원평가가 도입되었다. 유치원평가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에 유치원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평가 참여에 따른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과 소진에 관해 분석해 봄으로써 유치원평가가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치원평가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교사 307명이다. 연구도구로는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발달 자기평가도구, 교사 소진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 사후검증,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유치원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관평가 참여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전문성 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 경력이 높고, 기관평가에 3회 참여한 집단의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이 높았으며, 공립유치원 교사가 전문성 발달이 높았다.

둘째, 유치원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관평가 참여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에 따른 개인적 성취감 소진에서 차이가 나타나, 3년 이상 5년 미만의 중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개인적 성취감 소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교사의 기관평가 참여,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 소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관평가 참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유치원교사의 기관평가 참여와 전문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관평가 참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전문성 발달이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유치원교사의 기관평가 참여와 소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교사의 전반적인 교사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전문성 발달이 높았으며, 교사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정도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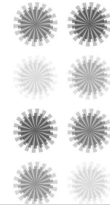
넷째, 유치원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관평가 참여,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를 이해하는 전문성과 교사효능감이 낮으며,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소진 총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평가에의 참여가 교사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반면 소진 정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평가제가 교사의 효능감과 전문성을 발달시켜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촉발시킴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key word: 유치원평가, 교사효능감, 전문성 발달, 소진

Comparative Study of Laws Protecting Children from Paedophilia and Child Pornography (아동성애 및 아동 포르노로부터의 아동 보호 관련 법 비교연구)



- ▮ 박지민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조교수)
- ▮ 이종원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창업학부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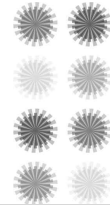
Children have a right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tection. In this time of internet freedom, children are easily exposed to sexual predators. In addition, our connivance in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encouraging child sexual abuse in a way. By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paedophilia and child pornography in relation to child sex offenses and the legal responses to th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try to evaluate societal tolerance to paedophilia and child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right and to make some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We first define paedophilia, child pornography, and pseudo-child pornography. Then we discuss problems related to them and review the approaches in Korea to view and deal with them. We also investigate the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children from harms caused by paedophilia and child pornography. For example, a new bill in Japan outlawed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like most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we propose solutions that would protect children from child sexual exposure.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relevant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We used the data from domestic and foreign papers and government agencies.

As the children become easy targets for sexual offenders, it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time and effort to re-evaluate the laws governing child sexual abuse and come out with the better law. Society also needs to be less tolerant of child pornography and pseudo-child pornography in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our goal to counter and prevent child sex offenses. Children are grossly disadvantaged in protecting their rights because they do not know and cannot claim their rights. Thus, there should laws to help keep children from harm.

Keywords: 아동성애, 아동 성학대, 아동 성범죄, 아동의 신체에 대한 권리

Baumrind의 이론에 따라 분류한 아버지의 양육스타일과 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참여의 차이



- Ⅰ 이지민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Ⅰ 노은혜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Ⅰ 김연하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가족형태의 변화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논의가 가족의 주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권리 중 하나인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의 책임과 협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스타일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만 4세 유아를 가진 아버지의 양육스타일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타일 군집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타일 군집유형에 따른 양육참여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만 4세 유아 1487명이다.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조복희 외(1999)의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한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유형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군집분석을 통해 Baumrind(1971)의 양육스타일 4유형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홍성례(1995)가 개발하고 수정한 양육참여 척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타일(4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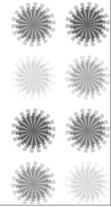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첫째,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위주의적 집단’, ‘권위가 있는 집단’, ‘허용적 집단’, ‘방임적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온정적 태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태도가 높은 집단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았고 온정적 태도가 낮은 집단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각각 양육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임적 집단, 권위주의적 집단, 허용적 집단, 권위가 있는 집단 순으로 양육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군집분석을 통해 4유형으로 나눈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의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이라는 대규모의 대표적 표본을 이용하여 만 4세 유아를 가진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을 Baumrind(1971)의 이론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key word: 양육스타일,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 Baumrind

부부갈등과 자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Ⅰ 진효려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과정)
- Ⅰ 김상림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I. 연구목적

2012년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초중고생 학업중단의 49.96%가 학교생활부적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 교육부 통계).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안 시스템의 부족함을 고려할 때 일탈이나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이어지는 학령후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 및 내적변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내적요인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I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총 240명으로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와 Seid 및 Fincham(1992)이 개발한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부부갈등척도를 사용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하고 이미라(2010)가 수정·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했으며,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1993)이 개발하고 우소연(2008)은 수정·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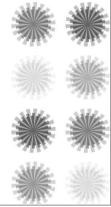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변인 및 자아존중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교사관계에서만 여아($M=3.61, SD=.68$)가 남아($M=3.40, SD=.7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인 특성과 위협 및 자기비난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10.26, p<.001$).

IV. 결론

가정 내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이러한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의 지지·강화와 함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key word: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 ▮ 하병녕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과정)
- ▮ 김상림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I. 연구목적

가족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 관계를 형성하던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이후 집단 내에서의 또래관계로 사회관계를 확장해 나가며 특히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후기학령기의 또래유능성은 이후의 사회성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에는 환경적 요인인 가정변인과 내적요인인 정서조절능력이 있다. 가정변인 중 부모-자녀 간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또래관계 및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가 인지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I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한 곳의 4, 5, 6학년 학생 총 221명이다. 연구도구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6)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역하고 남연희(2008)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분리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했으며,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하고 윤승이(2007)가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1996)이 제작하고 하지원(2004)이 수정한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일원변량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Baron과 Kenny(1985)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했다.

III. 연구결과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 및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또래유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조절능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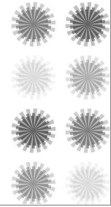
IV.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인 또래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매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ey word: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유능성, 정서조절능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유아 인권 및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Ⅰ 조명자 (호서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전공 박사과정)
Ⅰ 이서영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된 연구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어머니)를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수급자가정을 포함한 취약가정과 이러한 취약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 및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유아 인권 및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학부모(어머니)를 설립유형별로 표집하였다. 이들 중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수급자가정을 포함한 취약가정이 44명이고 취약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이 157명으로 총 20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영유아 인권 및 영유아 학대 인식의 일반적 경향

영유아 인권인식의 영역별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모든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5점 만점에 4.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든 활동에 영유아가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는 4.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4.78점으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영유아 인권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영유아에 대한 학대 인식의 영역별 일반적 경향은, 4점 만점에 성학대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서학대(3.85점), 신체학대(3.83점)가 유사하고 방임이 3.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방임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3.84점으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어머니의 영유아 인권과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비교

일반가정 어머니가 취약가정 어머니보다 영유아 인권 인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t=1.325, n.s.$)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t=2.658, p<.01$; $t=3.344, p<.01$; $t=2.215, p<.05$)과 총점($t=2.859, n.s.$)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어머니의 영유아 학대 인식은 정서 학대 영역에서만 일반가정 어머니가 취약가정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8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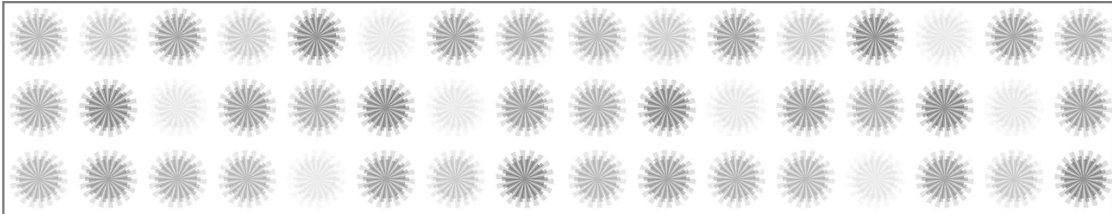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유아 인권 및 학대에 대한 인식의 관계

어머니의 영유아 인권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 차원하고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학대 인식의 일부 영역과 양육행동의 일부 차원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반면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가졌을수록 정서학대($r=-.199, p<.01$)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강제적인 양육행동을 가졌을수록 신체학대($r=-.166, p<.01$), 정서학대($r=-.199, p<.01$) 및 전체적인 학대($r=-.160, p<.01$)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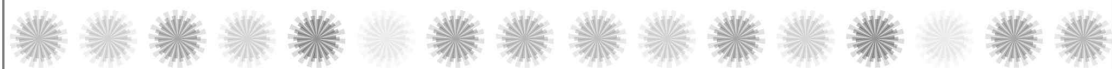
본 연구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영유아 학대 중 방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으므로 방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취약가정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영유아 인권의 모든 영역과 전체 그리고 학대 중에서는 정서 학대에 있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차원은 영유아 인권 인식 및 학대 인식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통제나 강제 차원은 영유아 인권 인식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영유아 학대 인식의 일부 영역과는 부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인권인식과 학대인식을 포함한 아동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key word: 영유아 인권, 영유아 학대, 어머니 양육행동



대한민국 아동권리 어디까지 실현되었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부 록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협약 조항 문구 포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차 회의에서(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를 심의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II.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

3. 위원회는 다음 법안의 채택을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다음의 조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Ⅲ.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4 조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한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정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 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의의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비차별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 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p>제 7 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p>제 8 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안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p>제 13 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p>제 14 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채용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을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하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7 조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 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 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d) 하여,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기준을 고려하라.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운이, 활용 가능한 재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운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

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여하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 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게 시민 지위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 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적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 c) 모든 군사법, 메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 (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 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 e) 피해자 프라이머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머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구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이상인가?”

| 인 쇄 | 2015년 12월

| 발 행 | 2015년 12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43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452-0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